

정책연구 2010- 9

# 제주지역 여성폭력실태와 예방프로그램 개발

정 영 태

제주발전연구원



## 발 간 사

2010년 유아 성폭력을 비롯하여 다양한 성범죄가 언론에서 이슈화 되었지만, 여성에 대한 폭력을 ‘사이코 패스’에 의해 일어나는 드문 일로써, 일상에서 발생한다는 생각이 보편화 되어 있지 않습니다. 최근 제정되거나 개정되는 법 역시 범죄자에 대하여 화학적 거세나, 위치 추적 장치 확대 등 강력한 처벌 중심으로 문제 해결에만 급급한 실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여성에게 일어나는 폭력은 성인의 경우 직장에서, 청소년의 경우는 학교에서, 어린이와 유아의 경우 친족이나 친·인척 등 대부분 피해자와 가해자가 전혀 모르는 사람이 아닌 일정 영역의 공동된 일상을 경험하는 관계에서 더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이러한 현상을 놓고 볼 때 처벌 정책의 강화 역시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여성에 대한 폭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원인을 찾는 것이 여성에 대한 폭력을 근절하는 가장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은 생애주기를 고려한 교육으로 어렸을 때부터 가정, 학교, 지역사회 등에서 젠더 감수성을 끊임없이 향상시킬 수 있는 학습과정과 인간관계에서 타인을 배려하고 공감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는 교육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모쪼록 본 연구가 향후 제주 지역 여성 폭력 근절을 위한 디딤돌이 되어 다양한 담론을 확장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여아와 여성, 그리고 모두에게 더 이상의 폭력이 일어나지 않기를 희망합니다.

2010. 10.

제주발전연구원  
원장 양 영 오



## 연구요약

### 1. 연구 목적

- 우리사회에서 여성에 대한 폭력문제는 인권문제로 부각되면서 사회의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음
- 이러한 시기에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제안하고 발전연구원에서 「제주지역 여성폭력실태와 예방프로그램」에 대한 연구를 추진하면서 지역 여성 폭력에 대한 실태 조사와 예방프로그램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게 되었음

### 2. 연구의 구성 및 연구 방법

- 연구 구성
  - 첫째, 여성 폭력에 대한 이론적 배경
  - 둘째, 지역 언론에 있어 여성 폭력에 대한 보도 실태
  - 셋째, 여성 폭력에 대한 실태 조사
  - 넷째, 여성에 대한 폭력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 연구 방법
  - 관련 법령 문헌 연구
  - 언론 보도 프레임 분석
  - 실태 조사 분석

### 3. 언론을 통해서 본 여성에 대한 폭력 보도 실태

- 조사 시기 및 대상
  - 2007~2010. 6. 30.
  - 일간지 3개사(제민일보, 한라일보, 제주일보)
  - 온라인신문 1개사(제주의 소리)
- 가정폭력 관련 보도 122건, 성폭력 관련 보도 591건, 성매매 관련 456건, 성희롱·성추행 보도 163건으로 1,332건이 총 보도되었음
- 분야별로 살펴보면 가정폭력 보도는 제민일보가 년 평균 38.5건, 성폭력 보도는 제주의 소리가 년 평균 35.2건, 성매매 보도는 한라일보가 년 평균 29.4건, 성희롱·성추행 보도는 한라일보가 년 평균 29.4건을 보도한 것으로 나타났음

- 연도별로 살펴보면 가정폭력 보도는 2007년 4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성폭력 2008년 205건, 성매매 보도 2007년 178건, 성희롱·성추행보도는 2007년 55건이 보도되었음
- 그러나 전반적으로 여성 관련 폭력에 대한 보도가 점차 감소하고 있는 추세임

#### 4. 여성 폭력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

- 조사 개요
  - 목표 : 여성 및 아동·청소년 등에게 발생하고 있는 폭력 실태에 대하여 인지 여부와 폭력 피해자 지원 기관 및 상담기관에 인지 정도 파악
  - 기간 : 2010. 11. 30 ~ 2010. 12. 13
  - 조사대상 : 제주도민(20~50세), 임의추출 510부
  - 조사방법 : 구조화된 설문지, 면접원에 의한 1:1면접조사
  - 조사지역 : 제주특별자치도 전지역
  - 조사내용 : 성역할 내용, 폭력에 대한 인식, 폭력에 대한 처벌 수위, 폭력 피해자 지원 제도, 폭력예방프로그램, 인구 통계적 특성
- 인구 통계적 특성
  - 응답자 거주지 : 동지역 71.4%(제주시 동지역 51.2%, 서귀포시 동지역 20.2%)  
읍면지역 28.6%(제주시 읍면지역 18.4%, 서귀포시 읍면지역 10.2%)
  - 응답자 연령 : 20대 33.7%, 30대 26.5%, 40대 27.8%, 50대 12.0%
- 성교육에 대한 인식
  - 성교육의 필요성에 대하여 여학생 보다 남학생이 더 필요하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음
- 남녀 성 가치관
  - 남성의 순결도 지켜져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으며, 성담론에 대하여 남성이 여성에 비하여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혼전 성관계에 대한 가치관 역시 개방적인 의사가 전체 응답자의 38.8%로 나타났으며, 동거에 대한 인식 역시 26.6%가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성폭력에 대한 인식
  - 성폭력 피해 가능 응답자의 58.4%, 피해자 가족이 가능 여부 69%

- 성폭력에 대한 통념으로 피해자 유발론에 대하여 반대 의견 53.5%, 성폭력 피해자는 대부분 여아와 여성이다 57.5%, 성폭력 가해자와 안면 있다 59.2%
-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
  - 가정폭력 신고해야 한다 53.3%, 가정폭력이 음주와 관련 있다 63.3%
- 성희롱에 대한 인식
  - 성희롱은 친밀함의 표시가 아니다 79.6%, 일방적인 농담이나 스킨십은 불쾌하다 54.5%
- 성매매에 대한 인식
  - 성매매는 여성에 대한 폭력이다 67.6%
- 폭력과 일상생활
  - 야간은 여성, 아동·청소년에게 안전하지 않다 84.3%
  - 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 필요 91.4%
- 폭력의 유형
  - 폭력의 유형으로 스토킹이 포함된다는 응답이 87.6%로 높게 나타났으며, 언어 폭력으로는 모욕을 가장 많이 응답하였으며, 신체폭력의 경우 때리기를 가장 많이 응답을 하였음
- 폭력과 처벌
  - 현행 형량이 낮다 79.2%, 아동성폭력의 형량 강화 필요 94.1%, 성범죄자 신상공개와 위치추적 장치 강화 89.2%, 거주제한제도 90% 필요, 폭력 예방교육 제도적 의무화 71.4%
- 성폭력에 대한 인식
  - 나도 성폭력 피해자가 될 수 있다 58.4%, 성폭력 피해자 가족이 될 수 있다 69%, 가해자에 대하여 안면이 있을 수 있다 59.2%
-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
  - 가정폭력은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53.3%, 음주와 가정폭력은 상관이 있다 63.3%
- 긴급전화 및 지원기관 인지 여부
  - 1366, 1577-1366, 1389, 1391, 1388, 117 등 긴급전화를 알고 있지 못하다 평균 92.7%
  - 원스톱지원센터, 아동학대예방센터, 아동성폭력센터, 성폭력피해자 지원기관, 성폭력 피해자 쉼터, 가정폭력피해자 지원기관, 가정폭력피해자 쉼터, 장애인 성폭력상담기관, 성매매 피해자상담소, 성매매피해자 쉼터, 미혼모지원시설 등에 대하여 알고 있지 못하다 평균 88.4%

○ 폭력예방 교육과 내용

- 폭력예방 교육 내용 만족 11.4%
- 생애주기별 교육 필요 76.7%, 폭력예방을 위해 필요한 교육으로 인권교육, 성폭력예방교육, 가정폭력 예방교육, 성매매예방교육, 성희롱예방 교육 등 모두 필요 57.1%, 여성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장치로 거리 치안 강화 50.8%, 예방교육 22.0%로 나타남

## 5. 여성 폭력에 대한 예방 예방프로그램

○ 예방 프로그램의 필요성

- 생애주기별 예방 프로그램을 추진함으로써 폭력에 대한 잘못된 통념을 바로잡고 인권 존중을 위한 사회 분위기 확산을 위해 필요

○ 유형별 예방 프로그램 마련

-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등 유형별 예방프로그램 마련 대상별 연령별 교육 실시

○ 예방 프로그램 추진 주체 및 예산

- 예방 프로그램 추진 주체는 지자체, 교육청, 경찰청, NGO 등이 거버넌스 체계로 추진 수행
- 예산은 기존 여성 관련 예산에서 별도의 예산을 수립 꾸준히 교재 개발 및 예방교육이 수행 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음

## 6. 연구의 의의

- 사건 해결에서 벗어나 여성 문제를 예방 중심의 시각을 제공하도록 의식 전환을 가져왔음
-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제주 지역의 여성에 대한 폭력 인지도를 점검할 수 있었으며, 향후 여성에 대한 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모든 영역이 함께 노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음



# 목 차

##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	3
3. 연구의 기대효과 .....	4
4. 연구의 한계 .....	4

## II. 이론적 배경

1. 폭력에 대한 개념 .....	5
2. 유형별 여성에 대한 폭력 .....	5
1) 가정폭력 .....	5
2) 성폭력 .....	14
3) 성매매 .....	21
4) 아동성폭력 .....	29
5) 성희롱 .....	32
3. 지역 언론보도를 통해 본 여성에 대한 폭력 보도 실태 .....	35
1) 가정폭력 보도 실태 .....	36
2) 성폭력 보도 실태 .....	37
3) 성매매 보도 실태 .....	38
4) 성희롱·성추행 보도 실태 .....	39

### Ⅲ. 지역에 있어서 여성과 폭력에 대한 인식 조사

1. 조사개요 .....	41
1) 조사목적 .....	41
2) 조사기간 .....	41
3) 개요 .....	41
2. 조사결과 .....	42
1) 인구 통계적 특성 .....	42
2) 성에 대한 인식 .....	44
3) 폭력에 대한 인식 .....	59
4) 폭력과 처벌 .....	76
5) 폭력피해자 지원제도 .....	79
6) 폭력 예방 프로그램 .....	86

### Ⅳ. 여성에 대한 폭력 예방 프로그램

1. 예방 프로그램 개요 .....	89
2. 여성에 대한 폭력 예방프로그램(안) .....	90
3. 프로그램 운영 추진체계 및 예산 .....	93
1) 추진체계 .....	93
2) 소요예산 .....	94

### Ⅴ. 결론 및 제언 .....

### 참고문헌 .....

### 부록1. 설문조사표 .....

# 표 목 차

<표 1> 형법 조항에 따른 가정폭력 .....	8
<표 2> 아동복지법상의 가정폭력 .....	10
<표 3> 폭력행위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상의 가정 폭력 .....	10
<표 4> 성폭력특별법 조항에 따른 성폭력 .....	16
<표 5> 성폭력의 후유증 .....	20
<표 6> 성매매의 유사 개념 .....	22
<표 7> 성매매의 유형별 특성 .....	24
<표 8> 아동성폭력 후유증(급성, 만성) .....	31
<표 9> 연령별 아동성폭력 후유증 .....	31
<표10> 성희롱, 강제추행, 강간의 개념 .....	33
<표11> 연도별 가정폭력 보도 건수(2007~2010.6.30) .....	36
<표12> 신문사별 가정폭력 보도 건수(2007~2010.6.30) .....	36
<표13> 연도별 성폭력 보도 건수(2007~2010.6.30) .....	37
<표14> 신문사별 성폭력 보도 건수(2007~2010.6.30) .....	38
<표15> 연도별 성매매 보도 건수(2007~2010.6.30) .....	38
<표16> 신문사별 성매매 보도 건수(2007~2010.6.30) .....	39
<표17> 연도별 성희롱·성추행 보도 건수(2007~2010.6.30) .....	39
<표18> 신문사별 성희롱·성추행 보도 건수(2007~2010.6.30) .....	40
<표19> 응답자의 거주지와 성별 .....	43
<표20> 응답자의 연령 .....	43
<표21> 응답자의 학력과 직업 .....	44
<표22> 성교육의 필요성 .....	45
<표23> 남녀사이에서의 “아니오”에 대한 통념 .....	46
<표24> 남성의 몸에 대한 통념 .....	47
<표25> 성담론 표현의 자유 .....	47
<표26> 남성 성욕구에 대한 인식 .....	48
<표27> 성관계와 남성의 상관 여부 .....	49

<표28> 성관계와 여성의 상관 여부 .....	50
<표29> 혼전 성관계에 대한 의식(1) .....	50
<표30> 혼전 성관계에 대한 의식(2) .....	51
<표31> 혼전 임신에 대한 의식 .....	52
<표32> 동거에 대한 인식 .....	53
<표33> 청소년의 성관계 .....	54
<표34> 남편의 권위 존중 여부 .....	55
<표35> 성별에 따른 남편의 권위 존중 여부 .....	55
<표36> 가정 내 동등한 의사결정 여부 .....	56
<표37> 음주와 폭력 가능 여부 .....	57
<표38> 회식과 야한 농담 가능 여부 .....	57
<표39> 자녀 돌봄은 엄마/아내의 책임 여부 .....	58
<표40> 성폭력의 발생여부 .....	59
<표41> 성폭력이 가족에게 발생할 가능성 .....	60
<표42> 데이트 성폭력의 발생 가능성 .....	61
<표43> 성폭력 피해 가능성 .....	62
<표44> 성폭력 피해자 유발론 .....	62
<표45> 성폭력 피해자 - 여아 또는 여성의 높은 비 .....	63
<표46>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 .....	63
<표47> 성폭력 피해자의 일상생활 부적응 여부 .....	64
<표48> 야간 성폭력 발생 여부 .....	65
<표49> 아는 사람으로부터 성폭력 피해 가능성 .....	66
<표50> 성폭력예방 교육의 비효과 여부 .....	66
<표51> 가정폭력 신고의 필요성 .....	67
<표52> 가정폭력과 음주 관련성 .....	67
<표53> 가정폭력의 일상화에 대한 견해 .....	68
<표54> 대상자별 가정폭력 인지 여부 .....	68
<표55> 가정폭력의 세대 전이 여부 .....	69
<표56> 가정폭력 예방교육의 효과 .....	69
<표57> 가정폭력 증가 여부 .....	70
<표58> 성희롱과 친밀함 .....	70

<표59> 성적인 농담과 스킨십 여부 .....	71
<표60> 성매매는 여성에게 가해지는 폭력이라는 견해 .....	71
<표61> 애장관계에서의 폭력 가능성 .....	72
<표62> 야간안전 여부 .....	73
<표63> 폭력 예방의 필요성 .....	74
<표64> 폭력 예방의 필요성(성별) .....	74
<표65> 폭력으로 인지되는 스토킹 .....	75
<표66> 언어폭력의 유형 .....	75
<표67> 신체폭력의 유형 .....	76
<표68> 성폭력에 대한 낮은 형량 .....	77
<표69> 아동성폭력 형량 강화 필요성 .....	77
<표70>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와 위치추적장치 강화 .....	78
<표71> 성범죄자의 거주제한 제도 도입 여부 .....	78
<표72> 폭력예방교육 의무 필요성과 처벌 강화 .....	79
<표73> 성범죄자 알람e사이트 인지 여부 .....	80
<표74> 1366 제공 서비스와 인지 정도 .....	80
<표75> 원스톱지원센터 인지 여부 .....	81
<표76> 폭력예방 및 피해자 지원 긴급전화 인지 여부 .....	82
<표77> 폭력피해자 지원 기관 인지 여부(1) .....	83
<표78> 폭력피해자 지원 기관 인지 여부(2) .....	83
<표79> 폭력피해자 지원 기관 인지 여부(3) .....	83
<표80> 피해자 지원 전화 상담 서비스 이용 여부(1) .....	84
<표81> 피해자 지원 전화 상담 서비스 이용 여부(2) .....	84
<표82> 피해자 지원 기관 이용 여부(1) .....	85
<표83> 피해자 지원 기관 이용 여부(2) .....	85
<표84> 초·중등 교육법과 여성폭력 예방 교육 인지 여부 .....	86
<표85> 생애주기별 폭력 예방 교육 필요성 .....	87
<표86> 폭력예방을 위해 필요한 교육 .....	88
<표87> 여성안전을 위해 필요한 장치 .....	88
<표88> 여성폭력 예방을 위한 소요예산 .....	94

# 그림 목 차

<그림 1> 성별에 따른 성교육의 필요성 .....	45
<그림 2> 남성의 성욕구에 대한 인식(성별) .....	48
<그림 3> 성별에 따른 혼전 성관계에 대한 인식 .....	51
<그림 4> 성별에 따른 혼전 임신에 대한 견해 .....	52
<그림 5> 성별에 따른 동거에 대한 견해 .....	54
<그림 6> 회식자리에서 야한 농담에 대한 생각 .....	58
<그림 7> 성폭력 피해 당사자가 될 가능성(성별) .....	59
<그림 8> 성폭력이 가족에게 발생할 가능성(성별) .....	60
<그림 9> 성폭력 피해자의 신고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성별) .....	64
<그림10> 야간 성폭력 발생에 대한 생각(성별) .....	65
<그림11> 애정과 폭력의 가능성 .....	72
<그림12> 1366인지여부(성별) .....	81
<그림13> 폭력예방 교육의 수준 .....	87
<그림14> 여성폭력예방을 위한 거버넌스 모형 .....	93

# I.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우리사회에서 여성에 대한 폭력문제는 새로운 인권문제로 부각되면서 사회의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성폭력·가정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하여 「여성폭력종합방지대책」이 마련하였으며, 성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하여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0261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법률 제10258호)」,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법률 제10371호)」, 「특정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0257호)」 등 4건, 가정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0300호)」,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법률 제8580호)」 등 2건, 성매매를 근절하기 위하여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026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법률 제10261호)」 등 2건,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법률 제10391호)」 등 9건의 법령이 제정되어 있다.

실질적으로 우리사회에서 여성인권에 대한 시작은 가정폭력, 아동성폭력,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등 인권차원에서 출발한 것이 아니라 성매매방지에서 여성 인권이 처음으로 다루어졌다. 1946년 미군정이 일제 강점기에 도입된 “공창제”를 공식적으로 폐기하고 1961년 「윤락행위등방지법」의 제정을 그 시작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여성인권은 대부분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여성폭력 문제에 대하여 제도적인 접근은 1991년 송백권살해사건<sup>1)</sup>, 1992년 김영오살해사건<sup>2)</sup> 등이

1) 송백권살해사건은 9살 때 이웃집 아저씨에게 성폭행을 당한 한 여성이 결혼을 하였음에도 어릴 때 강간에 대한 후유증이 원만한 가족관계의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고소를 하려 했으나 공소시효(당시 고소기간 6개월)가 이미 지나고, 가해자를 벌할 수 없는 현실에 직접 가해자를 살해하고 현장에서 검거된 사건으로 1991년 8월 26일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치료감호를 받았으며, 2심(항소기각), 3심(상소기각), 1993년 5월 1일 출소를 하게 된 사건이다. 이 사건으로 당시 전북 지역 여성단체를 중심으로 무죄석방을 위한 대책위 구성 등 성폭력피해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의 전환을 가져온 사건이다. “나는 사람을 죽인 것이 아니라 짐승을 죽였다”라고 항변하면서 어린이성폭력에

도화선이 되어 성폭력특별법이 제정되었다. ‘송백권살해사건’은 9살의 여아에게 일어난 성폭력의 후유증이 얼마나 심각한가를 알려준 사건이었으며, 92년 ‘김영오살해사건’ 근친 강간의 심각성을 공론화 시켜준 사건이다.

반면 ‘93년 “서울대 신교수3)”사건은 성희롱을 공론화 시키는 계기를 마련한 사건이다. 92년 서울대 조교가 되었으나 업무상 불필요한 신체적인 접촉에 대한 거부로 재임용에서 탈락되면서 그에 대한 사건을 공론화 하였으나, 오히려 명예훼손으로 고소되고 다시 항소와 상고를 거듭하면서 사건 발생 7년만인 1999년 유죄가 인정되어 5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승소’판결이 내려졌다. 이 사건을 계기로 1996년 「남녀고용평등법」이 개정 직장내 성희롱에 대한 사업주의 책임을 명문화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성폭력은 최근 밀양 지역 고교생의 여중생 집단 성폭행사건, 청각장애인학교 성폭행사건, 2006년 용산 초등학교 성폭행 살해 사건, 2006년부터 2008년까지 경기도 서남부 일대 여성 7명 연쇄살해사건, 안양 초등학교 납치 살해사건, 서귀포 초등학교 성폭행 살해사건, 제주 어린이집 보육교사 성폭행 살해사건 등 여성에게 일어나는 폭행이 더욱 흉포화 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성매매특별법」 제정 이후 1년 만인 2005년 3월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

대한 후유증이 얼마나 심각한가를 고스란히 보여준 사건이다. 광주고법 1991.12.20. 선고 91노 899,91감노80 형사부판결 : 상고기각 【살인등】 [하집1991(3),319])을 참고하면 된다.

- 2) 김영호살해사건은 1992년 1월 17일 발생한 사건으로 1992년 1월 19일 구속후 1992년 4월 4일 1심 선고에서 김진관 징역 7년, 김보은 징역 4년을 선고했으나, 같은 해 9월 14일 항소심 선고에서 김진관 징역 5년, 김보은 징역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 1992년 10월 2일 판사직권으로 김보은 석방, 1993년 2월 김보은 사면복권, 김진관 잔여형 1/2감형, 1995년 2월 17일 김진관 출소하였다. 사건의 전모는 1992년 9살 때부터 13년 동안 의붓딸(재혼가정)을 성폭행 한 의붓아버지를 남자친구가 살해한 사건으로 사건이다. 7살 때 어머니가 재혼을 하고, 9살 때부터 의붓아버지로부터 상습적인 성폭행을 당하다가 대학에 진학하면서 아버지와 떨어지게 되었고, 이를 남자친구에게 털어놓게 되고 남자친구가 성폭행을 그만 둘 것을 간청하자 오히려 검찰청 총무과장인 의붓아버지가 “다 잡아넣겠다” 등 당당하게 나오자 격분하여 가해자를 살해한 한 사건이다. 당시 사건이 공개된 것은 김진관의 아버지가 한국성폭력상담소에 상담을 의뢰하면서 알려지게 되었고, 전국적으로 대책위원회가 구성되어 구명활동과 함께 근친성폭력의 심각성을 드러낸 사건이다. 대법원 92.12.22 선고 92도2540 판결 판례(대법원, 1992), 서울고등법원 서울고등 1992.9.14. 92노1511(서울고등법원, 1992)을 참고하면 된다.
- 3) 서울대 ‘신교수사건’은 성희롱이 범죄임을 인식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사건으로 92년 서울대 화학과에 조교로 취직한 후 첫 출근을 한 조교가 지도교수로부터 업무상 불필요한 고의적 신체접촉을 당하고 이를 거부하자 재임용 탈락을 시키고 이에 대한 진상을 조사하는 등 해결책 요구에 대하여 오히려



속칭 미아리텍사스 화재, 군산 대명동, 개복동, 광주 송정리 등 성매매 여성들이 화재참사가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결국 여성을 둘러싸고 있는 성폭력, 가정폭력, 아동성폭력, 성희롱, 성매매 등 여성 폭력은 날로 심각해지고 흉포화 되고 있는 실정으로 이를 바탕으로 여성에 대한 폭력을 예방하기 위하여 환경 요인의 분석 역시 중요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여성과 관련한 폭력이 어떻게 전달되고 있으며,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성희롱 등 다양한 폭력이 어떻게 가해지고 어떻게 인지되고 있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아울러 이를 토대로 여성 및 아동에 대한 폭력 예방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속적인 여성 폭력 예방 활동에 활용하고자 한다.

##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본 연구는 문헌연구, 설문조사, 전문가 간담회, 언론보도 등의 방법을 바탕으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연구의 내용은 크게 이론적 배경, 언론보도, 조사를 통해 내용을 전개하고자 한다.

이론적 배경에서 폭력,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성희롱 등에 대한 정의, 정책 방향 등을 살펴보고, 언론에서 나타나고 있는 여성에 대한 폭력으로써 성폭력, 가정폭력, 성희롱, 성매매 등 보도 행태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폭력의 심각성에 대한 인지 조사로써 구조화된 설문을 통해 폭력의 인지정도, 폭력 대처 방법 인지 정도 등을 분석하고자 한다. 조사 내용은 6개의 영역으로 구분하여 일반 특성, 성역할에 대한 가치관, 폭력에 대한 인식 여부, 폭력에 대한 처벌 정도, 폭력 피해자 지원제도 인지 여부, 폭력 예방 프로그램 인지 여부 등을 조사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전문가 간담회 등을 토대로 여성에 대한 폭력을 예방하는 차원으로 교육 매뉴얼의 구성과 폭력 환경 개선에 대한 정책적 제언을 하고자 한다.

### 3. 연구의 기대효과

본 연구의 기대효과는 폭력에 대한 지역 수준의 의식 조사를 통해 여성폭력의 인지 여부 정도를 파악하고, 폭력에 대한 인식 수준으로써 일반적인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또한 개별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성폭력, 가정폭력, 아동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등 여성에 대한 폭력을 종합적으로 접근하면서 폭력의 심각성을 인식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아울러 여성폭력 관련 예방 교육 프로그램을 발굴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일반적으로 여성 중심의 조사에서 벗어나 여성 및 남성을 함께 조사함으로써 여성에 대한 폭력을 재인식하게 하는 중요한 단초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였다.

### 4. 연구의 한계

본 연구의 한계는 기대효과는 설문지를 중심으로 일반적인 견해를 조사함에 따라 일반화시키는데 있어 제한적인 한계를 지니고 있다.

또한 응답자가 폭력에 대하여 연관이 없음에도 응답을 하고 있어서 일부 적극적인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마지막으로 여성에 대한 폭력예방 프로그램의 개별 발굴이 필요하나, 예방교육과 연계하는데 있어 세부적인 프로그램 개발을 추진하고 못하고 예방교육 운영 목표를 제시하는데 그침으로 향후 개별 예방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세부연구가 추후 후속 연구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

## II. 이론적 배경

### 1. 폭력에 대한 개념

폭력은 난폭한 힘으로 거칠고 사납게 남을 제압할 때 쓰는 주먹이나 발 또는 몽둥이 따위의 수단이나 힘을 의미한다. 광의의 뜻으로는 무기로 억누르는 힘을 일컫기도 한다. 결국 폭력이란 행동, 언어, 기타 수단 등이 동원되어 강제적으로 개인이나 집단 등에게 물리적, 신체적 위해와 상해를 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결국 상대에 대한 배려나 존중이 결여된 것으로 성폭력, 가정폭력, 성희롱, 성매매, 학교폭력, 강간, 강간 살해 등 다양한 범죄로 나타나고 있다.

폭력은 주로 힘을 가진 자에 의해서 힘이 비교적 약한 상대를 제압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여성에게 일어나는 폭력 가운데 물리적인 폭력으로 심각성을 나타내는 것이 성적폭력으로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성희롱 등을 꼽을 수 있다.

### 2. 유형별 여성에 대한 폭력<sup>4)</sup>

#### 1) 가정폭력

##### (1) 가정폭력의 개념

가정폭력<sup>5)</sup>은 아내학대, 아내구타, 가족폭력, 배우자학대 등 다양한 용어로 병용

4) 2007년 제주발전연구원 정책연구(2007-25)인 「성·가정폭력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기관간 연계구축방안」에서 일부 발췌했음을 미리 밝혀둔다.

5) 가정폭력에 대한 폭력의 유형으로 스트라우스는 8단계로 구분하였다. K(물건을 던지는 행위), L(떠밀거나 움켜잡는 행위), M(뺨을 때리는 행위), L(발로 차거나 물어뜯거나 주먹으로 때리는 행위), O(물건을 때리거나 때린다고 위협하는 행위), P(계속 무차별로 때리는 행위), Q(칼이나 망치, 도끼 총 등으

되고 있다. 젠더가 이슈화 되면서 ‘학대’, ‘여성학대’, ‘구타’ 등의 용어가 대두되면서, ‘파트너학대(partner abuse)’, ‘배우자학대(spouse abuse)’, 친밀한 관계 폭력(intimate violence)’, ‘관계폭력(relationship violence)’등이 사용되고 있다.

우리나라 법에서 가정폭력이 규정된 것은 1997년 제정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가정폭력특례법. 2007년 개정 법률 제8580호)」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정폭력피해자보호법. 2007년 개정 법률 제8367호)」와 함께 형법의 규정에서 찾아 볼 수 있다. 그러나 가정폭력과 관련한 법률은 형법 제2편의 29가지로 규정된 범주를 벗어나지 않고, 「아동복지법」 위반 1가지와 상습범에 대하여 가중처벌 하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상의 21 가지 죄를 규정하고 있다.

우선 가정폭력특례법은 가정폭력 범죄의 형사처벌 절차에 관한 특례를 정하고 가정폭력 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환경의 조정과 성행의 교정을 위한 보호처분을 함으로써 가정폭력 범죄로 파괴된 가정의 평화와 안정을 회복하고 건강한 가정을 가꾸며 피해자와 가족구성원의 인권을 보호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가정폭력 행위자가 주로 남성인 현실을 고려하여 사회안전망이 불충분한 현실에서 행위자를 형사처벌 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문제와 가정 해체를 막고 가정이라는 특수한 영역에 국가의 형벌권을 가장 최소화 시켜 개입하려는 의도에서 출발하였다.

우선 “가정폭력”은 가족구성원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규정하면서 가족구성원을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 또는 배우

로 위협하는 행위), R(칼이나 망치, 도끼, 총 등을 실제 사용하여 구타하는 행위) 등으로 구분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가정폭력을 학대행위의 행태와 학대대상에 따라 유형별로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가정폭력의 유형>

행태 대상	신체적 폭행	성적 폭행	정서적 폭행	기본욕구의 충족실패
아동	벌주는 폭행 신체학대	아동 성학대	아동 심리적 폭행 또는 학대	아동방임
배우자/ 가족동반자	아내구타	배우자 강간	심리적 폭행 또는 학대	
노인	노인 신체적 학대	노인 성학대	노인 심리적 폭행 학대	노인방임

자관계에 있었던 자, 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관계(사실상 양친자관계를 포함)에 있거나 있었던 자, 계부모와 자의 관계 또는 적모와 서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자, 동거하는 친족관계에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가정폭력 범죄”는 형법 제2편 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 중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제258조(중상해, 존속 중 상해), 제260조(폭행, 존속폭행)제1항·제2항, 제261조(특수폭행) 및 제264조(상습범)의 죄, 제28장 유기와 학대의 죄 중 제271조(유기, 존속유기)제1항·제2항, 제272조(영아유기), 제273조(학대, 존속학대) 및 제274조(아동혹사)의 죄, 제29장 체포와 감금의 죄 중 제276조(체포, 감금, 존속체포, 존속감금), 제277조(중체포, 중감금, 존속중체포, 존속중감금), 제278조(특수체포, 특수감금), 제279조(상습범)(제276조, 제277조의 죄에 한한다) 및 제280조(미수범)(제276조 내지 제279조의 죄에 한한다)의 죄, 제30장 협박의 죄 중 제283조(협박, 존속협박)제1항·제2항, 제284조(특수협박), 제285조(상습범)(제283조의 죄에 한한다) 및 제286조(미수범)의 죄, 제33장 명예에 관한 죄 중 제307조(명예훼손), 제308조(사자의 명예훼손), 제309조(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 및 제311조(모욕)의 죄 제36장 주거침입의 죄 중 제321조(주거·신체 수색)의 죄, 제37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중 제324조(강요) 및 제324조의 5(미수범)(제324조의 죄에 한한다)의 죄, 제39장 사기와 공갈의 죄 중 제350조(공갈) 및 제352조(미수범)(제350조의 죄에 한한다)의 죄, 제42장 손괴의 죄 중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와 함께 배우자 또는 배우자관과 관련 죄목과 제366조의 죄로써 다른 법률에 가중처벌 되는 죄를 포함한다.

가정폭력에 있어 행위자는 가정폭력 범죄를 범한 자 및 가정 구성원인 공범(이하 "행위자"라 한다)을 말하며, “피해자”는 가정폭력 범죄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결국 법률에서 보는 가정폭력 범죄의 유형은 폭행, 감금, 상해, 유기, 협박, 체포, 학대, 혹사, 공갈과 같이 폭력적인 행위는 물론 재물손괴, 주거침입, 명예훼손, 모욕 등의 행위까지 포함하고 있다. 그 밖에 아동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아동을 이용하여 구걸을 하는 행위까지 가정폭력의 범죄에 포함시키고 있다.

<표1> 형법 조항에 따른 가정폭력

죄명	조항	내용	처벌
상해, 존속상해죄	제257조 제1항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는 행위 (상습범, 미수범 처벌)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상습범 정한 형 2분의1까지 가중)
상해, 존속상해죄	제257조 제2항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신체를 상해하는 행위(상습범처벌)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상습범 정한 형 2분의1까지 가중) 10년 이하 자격정지 병과
중상해, 존속중상해죄	제258조 제1항 제2항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 험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나 신체상해로 인하여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하는 행위(상습범 처벌)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상습범 정한 형 2분의1까지 가중) 10년 이하 자격정지 병과
중상해, 존속중상해죄	제258조 제3항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나 신체상해로 인하여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하는 행위(상습범처벌)	2년 이상의 유기징역 (상습범 정한 형 2분의1까지 가중) 10년 이하 자격정지 병과
폭행, 존속폭행죄	제260조 제1항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는 행위 (상습범 처벌)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폭행, 존속폭행죄	제260조 제2항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는 행위(상습범 처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10년 이하 자격정지 병과
특수폭행죄	제261조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의 신체,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는 행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10년 이하 자격정지 병과
유기, 존속유기죄	제271조 제1항	노유, 질병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부조를 요하는 자를 보호할 법률상 또는 계약상 의무 있는 자가 유기하는 행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유기, 존속유기죄	제271조 제2항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노유, 질병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부조를 요하는 자를 보호할 법률상 또는 계약상 의무 있는 자가 유기하는 행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영아유기죄	제272조	직계존속이 치욕을 은폐하기 위하거나 양육 할 수 없음을 예상하거나 특히 참작할 만한 동기로 인하여 영아를 유기하는 행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죄명	조항	내용	처벌
학대, 존속학대죄	제273조 제1항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을 학대하는 행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학대, 존속학대죄	제273조 제2항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학대하는 행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아동학사죄	제274조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16세 미만의 자를 그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한 업무에 사용할 영업자 또는 그 종업자에게 인도하거나 인도하는 행위	5년 이하의 징역
체포, 감금, 존속 체포, 존속감금죄	제276조 제1항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하는 행위 (상습범, 미수범, 상법범의 미수범 처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체포, 감금, 존속 체포, 존속감금죄	제276조 제2항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체포 또는 감금하는 행위 (상습범, 미수범, 상법범의 미수범 처벌)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중체포, 중감금, 존속중체포, 존속중감금죄	제277조 제1항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하여 가혹한 행위를 가하는 행위(상습범, 미수범, 상법범의 미수범 처벌)	7년 이하의 징역
중체포, 중감금, 존속중체포, 존속중감금죄	제277조 제2항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체포 또는 감금하여 가혹한 행위를 가하는 행위 (상습범, 미수범, 상법범의 미수범 처벌)	2년 이상의 유기징역
특수체포, 특수감금죄	제278조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체포 또는 감금하여 가혹한 행위를 가하는 행위 (미수범 처벌)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 까지 가중
협박, 존속협박죄	제283조 제1항	사람을 협박하는 행위 (상습범, 미수범, 상법범의 미수범 처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협박, 존속협박죄	제283조 제2항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협박하는 행위 (상습범, 미수범, 상법범의 미수범 처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명예훼손죄	제307조 제1항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명예훼손죄	제307조 제2항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자의 명예훼손죄	제308조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모욕죄	제311조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는 행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
주거신체수색죄	제321조	사람의 신체,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자동차,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을 수색하는 행위	3년 이하의 징역

죄명	조항	내용	처벌
강요죄	제324조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행위 (미수범 처벌)	5년 이하의 징역
공갈죄	제350조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는 행위 또는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는 행위(미수범 처벌)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재물손괴 등 죄	제366조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효용을 해하는 행위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그 밖의 「아동복지법」 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법률제7891호)」 에서 가정폭력은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

<표2> 아동복지법상의 가정폭력

죄명	조항	내용	처벌
금지행위죄	제29조 제8항	아동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아동을 이용하여 구걸을 하는 행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표3> 폭력행위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상의 가정폭력

죄명	조항	내용	처벌
상습폭행 등의 죄	제2조 제1항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등)의 행위	1년 이상의 유기징역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강요)의 행위	2년 이상의 유기징역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행위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상습폭행 등의 죄	제2조 제2항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행한 자	각 형법 본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상습폭행 등의 죄	제2조 제3항	폭력행위등의처벌에관한법을 위반하거나 폭행 등의 형법 각조 위반으로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자로서 다시 위와 같은 행위를 하여 누범으로 처벌되는 행위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한 2010년 일부 개정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여성가족부장관이 3년마다 가정폭력에 대한 실태 조사의 실시와 발표를 명시하고 있으며, 「초·중등교육법」은 각급 학교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정폭력 예방과 방지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때 실시되는 교육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 「여성발전기본법」 제17조의 2에 따른 성희롱 예방교육 및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4조에 따른 성매매 예방교육 등을 통합해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 (2) 가정폭력에 있어 잘못된 통념

가정폭력에 대한 역사는 우선 로마법과 성경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 로마법에서는 우선 남편에게 아내에 대한 절대권을 부여하면서 신체적인 힘을 통해 아내를 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다. 영국 관습법 역시 남편이 사용한 무기가 ‘엄지손가락 보다 굵지 않은 막대기’에 한하여 구타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였다. 1864년 노스캐롤라이나주 법원은 ‘영원한 상처가 가해지거나 혹은 지나친 폭력이 있지 않는 한 가정 내 체벌에 개입해서는 안된다. 법은 이들이 화해하고 남편과 아내로 살게 하는데 당사자들끼리 남겨 두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보고, 이를 선호하여 가정의 심판을 침해하거나 혹은 가정 내부에 까지 들어가지 않을 것이다’라는 판결을 내리기도 하였다. 19세기 여성운동이 본격화 되면서도 남편의 아내 학대는 관심사가 되지 못하였으나 1970년대 제2차 페미니스트들이 본격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면서 대중의 관심을 받기 시작하였다.

이를 토대로 가정폭력에 대한 사회통념으로 알려진 잘못된 통념은 몇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다.

우선 배우자나 가족 구성원에 대하여 ‘맞을 짓을 했으니까 맞는다’에 대한 인식이 가장 많이 뿌리 깊게 박혀있다. 대부분의 가해자들은 사사건건 트집을 잡거나 이유 없이 폭력을 일삼으면서 가해자의 합리적인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데 이것 역시 가해자의

트집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이다.

다음으로 ‘내 배우자는 내 맘대로 할 수 있다’는 통념이다. 이는 배우자를 마치 자신의 소유물로 생각하는 가부장제사회의 산물인데 family의 어원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라틴어로 하인이나 노예를 뜻하는 famulus에서 유래함에 따라 가족 구성원을 소유의 개념으로 잘못된 통념 중에 하나이다.

셋째, 가정폭력에 있어 ‘가해자는 모두 정신병자나 알코올중독자’라는 통념이다. 그러나 가정폭력이 일어나고 있는 가정에서 가해자는 알코올중독과 정신병자가 오히려 극히 적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반대로 배우자를 위해하기 위하여 술을 마시기도 하며, 배우자에 대한 의처증·의부증이 폭력의 원인으로 조사되기도 한다.

넷째, ‘가정폭력이 일어나는 가정은 대부분 저소득가정’이다 이는 전체적으로 가정폭력이 저소득층에서 많이 발견되고 있으나 가정폭력의 사례는 빈부·학력 등과 무관하게 전 계층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다섯째, ‘맞고 사는 사람은 문제가 있는 사람이다’라는 통념으로 역시 “피해자 유발론”이다. 반복되는 피해자의 경우 폭력과 폭력에 대한 공포로 좌절을 반복함에 따라 행동양식이 일상화되면서 반복된 구타를 수용하고 있다. 결국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상담 등의 치료를 통해 행동 교정을 통해 변화를 모색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집안일로 간섭하지 말아야한다’로 남의 집안일로 상관하지 않아야 한다는 가치관이다. 1800년대 노스캐롤라이나 주법원에서 ‘영원한 상처가 가해지거나 혹은 지나친 폭력이 있지 않은 한 가정 내 체벌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 법은 이들이 화해하고 남편과 아내로 살게 하는데 당사자들끼리 남겨 두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보고, 이를 선호하여 가정의 심판을 침해하거나 혹은 가정 내부에까지 들어가지 않을 것이다.’라는 판결처럼 당시 아내의 행동을 통제할 수 있는 남편의 권리와 주 정부의 무간섭주의 정책에 대한 법적인 사례가 있다. 이는 결국 가정폭력의 방치와 은폐에 직결되는 것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가정폭력 문제를 개인의 사적인 영역에서 공론화 된 것이 1998년 가정폭력방지법 제정되면서부터 인식의 전환을 가져오게 되었다.

### (3) 가정폭력의 후유증

가정폭력의 후유증은 대상을 중심으로 피해자, 자녀, 사회적 영향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우선, 피해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다양한 신체적 손상과 함께 심리적 영향을 받고 있으며, 정신적 피해는 장기적이고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게 된다. 가정폭력을 경험한 여성이 그렇지 않은 여성에 비하여 우울증 발병률이 4배나 높으며,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Post-Traumatic Stress Disorder:PTSD)를 나타낸다.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의 전형적인 증상은 공포의 재경험, 정신적 둔마, 신경과민 등으로 폭력의 지속으로 그 정도는 심화될 수밖에 없다. 즉 지속적인 구타 상태에서 여성은 타인에게 자존감 상실 등의 이유로 구타사실을 이야기 하지 못하고 구타하는 남편을 오히려 두둔하는 등 폭력에 의한 심리적 노예상태를 드러내기도 한다. 이런 정신 상태로 일상생활을 하면서 자살과 우울증, 정신착란, 무력감, 대인기피 등을 보이며 나아가 남편살해 등의 범죄<sup>6)</sup> 등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다음으로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은 부부간의 가정폭력은 자녀에 대한 폭력으로 쉽게 연결되고 있다. 어린 자녀에 대한 폭력은 물론 성적학대까지 딸에게 가해지면서 가정폭력이 일어나는 가정의 자녀들은 신체적 발육 상태와 정서적 수준이 일치하지 않거나 야뇨증, 섭식장애, 판단력 장애, 사고력 손상, 학습장애, 대인관계 부적응, 적응 장애 등 포괄적인 인격장애 까지 일으킬 수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자녀의 폭력 학습은 초기 일상화에서 드러나고 있지 않으나 성장한 후에 부모의 폭력의 인간관계 모델을 자연스럽게 학습함에 따라 잠재되어 폭력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다짐과 달리 직장이나 가정 등의 갈등관계에서 익숙해진 폭력이 자연스럽게 표출된다는 점이다. 또한 가정 내 폭력을 피하기 위하여 가출을 통해 비행청소년이 되기도 하며 이들은 다시 폭력의 연속선상에서 폭력의 재생산을 하는 경험을 하게

6) 보도된 뉴스 기사를 보면 남편의 배우자에 대한 폭력에 자녀에게 폭력과 더불어 방화 일어난 사고를 비롯하여 화기에 가스누출 등의 사고 등이 끊이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0663008>

된다. 결국 가정에서의 폭력의 사회문제의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영향은 폭력의 세대 간 전수<sup>7)</sup>와 피해자의 가해자 살해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다. 물론 세대 간 전수에 대한 논란은 아직도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으나 폭력의 원인을 설명하는 이론 가운데 하나로 '타인의 행동을 관찰함으로써 그 같은 행동을 배운다'는 사회학습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다. 즉 아이들은 행동을 관찰하고 그 사람이 보상을 받을 경우 그와 같은 행동을 쉽게 모방(대리적 강화)하고, 반대로 벌을 받을 경우 그와 같은 행동을 하지 않는다(대리적 처벌)는 것이다.

결국 부모의 폭력성이 자녀에게로 전이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으며, 자녀는 부와 함께 생활하면서 부모의 폭력이 자녀에게 노출되는 과정에서 아동기에는 어머니의 무력함을 동정하고 아버지를 미워하면서 소년기를 거치고 남자아이는 아버지의 공격적인 모습을 혐오하면서 정작 본인의 가정 안에서 자신이 다시 아버지가 했던 말과 공격적인 행동을 보이면서 거기서 오는 자괴감으로 자신의 학대는 물론 자녀학대, 알코올중독 등 더욱 심각한 문제를 표출하고 자녀들은 다시 부모의 행동을 답습하게 되는 것이다. 남아는 학대자로, 여아는 피학대자로 세대 간의 전이가 더욱 심화되는 것이다.

앞서 설명한 세대 간의 전이라는 이론을 반증하는 많은 연구들 역시 도출되고 있다. 그러나 놓쳐서 안 되는 중요한 점은 세대 간의 전이가 모두에게 절대적으로 일어나고 있지 않다고 해서 자녀가 부모의 폭력을 목격하거나 직접 경험함으로써 다른 아동에 비하여 폭력에 대한 수용성이 오히려 높다는 것은 배제할 수 없는 논의로 보아야 한다는 점이다.

## 2) 성폭력

### (1) 성폭력의 개념

우리 사회에서 성폭력에 대한 정의는 1980년대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성폭력을 이

---

7) 세대 간 전수 이론(Intergenerational Transmission Theory)

전에는 '정조에 관한 죄'로 강간이라는 개념을 여성의 정조를 침해한 범죄로 인식하여왔다. 실제로 정조에 대한 침해는 여성 개인에게 가해지는 범죄가 아닌, 여성이 속한 남성 가족의 명예를 더럽힌 범죄로 여성의 문제가 아닌 가족의 문제로 여겨져 왔다.

그러나 사회의 변화에 따라 성폭력이 여성운동 단체를 중심으로 사회의 문제로 등장하면서 성폭력이 성별 권력관계에서 오는 문제로 근절해야 할 폭력으로 인식되었다. 그 결과 성폭력에 대한 인식이 '여자로서 숨겨야 할 부끄러운 일', '여자의 드센 팔자'에서 '여성 또는 개인'의 '성적자기결정권 침해'로 규정되었다.

성폭력에 대한 법적 개념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 특별법'이라고 함)에서는 「형법」이 규정하고 있는 제2편 제22장 성풍속에 관한 죄 중 제242조(음행매개), 제243조(음화반포 등), 제244조(음화제조 등) 및 제245조(공연음란)의 죄, 형법 제2편제31장 약취와 유인의 죄 중 추행 또는 간음을 목적으로 하거나 추업(醜業)에 사용할 목적으로 범한 제288조(영리 등을 위한 약취, 유인, 매매 등), 제292조(약취, 유인, 매매된 자의 수수 또는 은닉), 제293조(상습범, 다만 제288조의 약취·유인이나 매매된 자 또는 이송된 자를 수수 또는 은닉한 죄의 상습범에 한한다), 제294조(미수범)에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제297조 제297조(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제300조(미수범), 제301조(강간등 상해·치상),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치사), 제302조(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 제303조(업무상위력등에 의한 간음),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의 죄, 제38장 절도와 강도의 죄 가운데 제339조(강도강간)의 죄와 함께 성폭력특별법 제3조(특수강도강간등)부터 14조(미수범)까지의 죄, 그리고 각 호의 범죄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 되는 죄를 성폭력 범죄로 보고 있다.

2010년 4월 개정된 사유 성폭력범죄가 해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날로 흉포화 되고, 다른 범죄에 비해 재범의 가능성이 높고 은밀하게 행해지고 있어 이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하여 성범죄자의 처벌 강화와 재범방지,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보완에서 이루어졌다. 처벌 강화에 있어서는 음주나 약물상태에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경우 「형법」 상 감경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강

제추행과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경우 처벌을 강화하고,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공소시효는 해당 성폭력 범죄로 피해를 당한 미성년자가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하도록 하고 특히 DNA 증거 등 입증 증거가 확실한 성폭력범죄의 경우 공소시효를 10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다.

재범방지 방안은 우선, 성폭력범죄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얼굴 등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다음으로 성인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인터넷에 등록·공개하고 성범죄자 정보를 19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인근 주민들에게 고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피해자보호 방안은 성폭력전담재판부 지정을 의무화하고, 수사과정에서 전문가 의견조회를 의무화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였다.

성폭력범죄의 처벌은 다음과 같다.

<표4> 성폭력특별법 조항에 따른 성폭력(형법외 신설조항)

죄명	성폭력 특별법조항	내용	처벌
특수강도 강간 죄 등	제3조	형법 제319조제1항(주거침입), 제330조(야간주거침입강도), 제331조(특수절도) 또는 제342조(미수범. 다만 제330조 및 331조의 미수범에 한함)의 죄를 범한 자가 형법 제297조(강간)부터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하는 행위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특수강간등	제4조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하는 행위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특수강간죄 등	제4조제2항	제4조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행위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제4조제3항	제4조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행위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 유기징역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제5조제1항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하는 행위	7년 이상의 유기징역

죄명	조항	내용	처벌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제5조제2항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하는 행위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제5조제3항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하는 행위	
장애인 대한 간음 등	제6조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여자를 간음하거나 사람에게 대하여 추행을 한 사람은 형법 제 297조(강간)또는 제298조(강제추행)으로 처벌	10년 이상의 유기징역 5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제7조제1항	13세 미만의 여자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하는 행위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제7조제2항	13세 미만의 사람에게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호(1, 2)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7년 이상의 유기징역
	제7조제3항	13세 미만의 사람에게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하는 행위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7조제4항	13세 미만의 사람에게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하는 행위	제1항부터 3항까지 적용
	제7조제5항	위계 또는 위력으로 13세 미만의 여자를 간음하거나 13세 미만의 사람에게 대하여 추행한 자	
강간 등 상해·치상	제8조	제3조제1항, 제4조, 제7조 또는 제14조(제3조부터 제7조까지 미수범으로 한정)의 죄 또는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 징역
		제5조, 제6조 또는 제14조(제5조 또는 제6조의 미수범으로 한정)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강간등 살인·치사	제9조	제3조 부터 제7조까지, 제14조(제3조부터 제7조까지 미수범으로 한정)의 죄 또는 형법 제297조(강간)부터 제300조(미수범)까지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살해한 때	사형 또는 무기징역
		제4조부터 제6조까지 또는 제14조(제4조부터 제6조까지 미수범으로 한정)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제7조 또는 제14조(제7조의 미수범으로 한정)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업무상 위력 등에 위한 추행	제10조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게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사람이 추행한 때	3년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이하벌금
		장애인의 보호, 교육 등을 목적으로 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가 보호, 감독 대상의 장애인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간음한 때	(간음)7년이하 징역 (추행)5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

죄명	조항	내용	처벌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제11조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한행위	제13조	카메라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는 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영리를 목적으로 제1항의 촬영물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유포한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벌금

우리나라의 형법 체계는 성폭력을 성적 자기결정권의 침해에 대한 범죄와 함께 성폭속, 성도덕을 해치는 범죄까지 포함시킴으로써 성폭력의 범주를 매우 폭넓게 해석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하게 짚고 넘어갈 부분은 여전히 “부녀(婦女)<sup>8)</sup>”라는 용어가 사용됨으로써 강간죄의 대상을 부녀로만 한정하고 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 물론 성폭력특별법의 경우 제2조(정의)에서 피해자를 성폭력으로 인하여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지 형법에서 부녀에 대한 강간 규정과 미성년자에 대한 규정이 개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그밖에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타)일부개정 2010.4.15 법률 제10258호] 제2조(적용범위)의 각 항은 물론 제4항의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14조(제13조의 미수범은 제외)의 죄 등에 적용함으로써 가중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다.

8) 현재 형법은 성폭력과 관련 “부녀”로 한정함에 따라 성폭력과 관련된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하는 한계를 지적받고 있다. 가령 여성에 의한 남성의 강간은 “강제추행죄”에 해당되며, 성전환 수술로 여성의 체형을 가진 사람에 대한 강간 역시 성립되지 않고 “강제추행죄”가 성립된다는 판결 사례를 통해 오히려 성폭력의 범주를 축소시키고 있다는 지적을 끊임없이 받고 있다. 이는 성폭력에 대한 규정이 여전히 남성 편향성을 강하게 유지함에 따라 성불평등성이 발생하고 성차별성을 내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2006년 여성가족부의 연구용역인 ‘현행 법령상 남녀차별 규정 발굴·정비’에 관한 연구 용역에 의하면 “부녀” 조항을 “다른 사람”이라는 조항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기도 하였다.



## (2) 성폭력에 대한 잘못된 통념

우리사회에 있어 성폭력은 매우 비일상적이고 예외적인 사건으로 인식됨에 따라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음도 예외적인 사건으로 인식되고 있다. 성폭력의 발생 원인을 여전히 개인에게 원인을 돌리고 있는 가치관이 변하고 있지 않으며, 일상화 되어 있는 성차별적 성별 이중 규범과 성문화 역시 크게 변화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차별적 요소가 끊임없이 재생산되면서 남성과 다르게 훈육되어 온 여성의 몸과 생각, 행동을 남성이 여성을 보호/통제하는 기반으로 인식하고, 이러한 상호비대칭적인 성별 관계의 모순이 결국 ‘성폭력’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점이다. 게다가 여전히 남성은 ‘성’은 향유할 권리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 성적 주체가 되지만, 여성은 부끄럽고 위험한 것으로 스스로가 성적 주체가 되고 있지 못한 현실이다. 또한 남성의 성적 실천 방식이 문제되기보다 성폭력 발생에 따르는 책임이 여성에게 전가됨으로써 몸의 위험과 취약함을 끊임없이 여성이 수용하도록 암묵적으로 강요하고 있는 실정이다.

결국 여성의 거부는 내숭이나 ‘여성스러움’의 표현으로 왜곡 되고, 성폭력의 은폐, 남성중심 진술에 있어 ‘강간’에서 ‘화간’으로 주장<sup>9)</sup>되고, 가까운 사람<sup>10)</sup>으로부터 성폭력이 발생하는 현실 등 여성이 성폭력 환경에 쉽게 노출되어 있다. 실제로 남성과 여성, 연장자와 연소자, 상사와 부하직원, 비장애인과 장애인, 내국인과 이주노동자 등의 관계에서 ‘누가 누구에게 성폭력을 행하는가’를 살펴보면 권력의 작동 방향과 성폭력의 상관관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다는 점이다. 최근 사회문제로 인식되기 시작한 동성 간의 성폭력 문제 역시 위계를 동반하여 일어남에 따라 권력과 성문제가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

9) 실제로 이러한 사례들은 성희롱에 있어서 남성들의 가부장제적인 문화로 종종 변화하여 당위성을 주장하는 사례로 등장하기도 한다. 전통을 따르는 입장으로 여성에게 가해지는 ‘언어적 폭력’이 친밀함으로 둔갑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10) 성폭력의 통계에서 통상 가해의 74%는 아는 사람에게 의해 발생하였으며, 13%는 가족 내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 (3) 성폭력의 후유증

성폭력에 있어 성폭력을 피해를 당한 사람들을 “피해자(victim)”로 표현하여 왔으나, 무력감과 치욕스러움 등이 내재되어 최근 “생존자(survivor)”로 바꾸어 표현되고 있다.

생존자라는 용어는 강간당한 사람의 용기와 결정권을 나타내고, 신체적인 생존과 함께 심리적인 회복까지 내포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실제 성폭행 생존자들은 생존과정에서 신체적 고통과 함께 정서적·행동적 고통의 경험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은 증상을 발견 할 수 있다.

<표5> 성폭력의 후유증

정서적 후유증	신체적 후유증	행동적 후유증
두려움, 치욕감, 당황함 걱정, 공포, 혼란 정신적 충격, 분노, 우울 보복감, 증오, 자존감 훼손 자기비난(아는 사람에게 강간당한 경우) 성폭행에 대한 기억의 잔영 무감각, 남성불신, 배신감(부부강간) 성폭행 재발에 대한 두려움 외상후 스트레스장애(PTSD)	다양한 신체적 상해 두통, 수면장애, 악몽 메스꺼움, 소화기장애 성병감염 임신	성행위 회피 성적문제의 야기 성폭행을 상기시키는 남성회피 거주지와 전화번호 변경 자살행동 약물중독

출처 : 조홍식의, 2004. 여성복지학

아울러 우리나라에서 생존자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는데 여성단체를 중심으로 2003년 “1회 생존자 말하기 대회”가 개최되면서 부터 알려지기 시작했다.

### 3) 성매매

#### (1) 성매매의 개념

성매매는 돈으로 타인의 성을 사고파는 행위와 이들을 연결하는 알선행위 등을 모두 포함하는 용어이다. 현재 우리사회에서 성매매를 지칭하는 용어는 윤락(淪落), 매춘(賣春), 매매춘(賣買春), 매음(賣淫) 등으로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으나 성을 사는 행위는 제외되고 파는 행위만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성매매 행위에 있어서 도덕과 윤리의 잣대를 갖고 성을 파는 쪽에만 초점을 둔 것으로 최근 성이 거래와 매매의 대상이 되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성매매 용어를 사용함에 따라 여성의 인권에 대한 폭력성을 공식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우선, 기존의 「윤락행위등방지법」은 윤락(淪落)을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하여 금품 기타 재산상이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성행위를 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다. 이는 도덕적인 관점을 지니면서 매춘 여성의 도덕적 타락 행위를 지칭하는 것으로 남녀의 윤리 규범을 다르게 인식하는 이중적 성윤리를 반영한다. 이러한 시각에는 성매매의 원인을 윤락 여성에게 있다는 인식이 내포되어 있다(김은실, 2001). 반면 윤락은 사전적 의미처럼 “여성이 타락하여 몸을 파는 처지에 빠졌다”라는 성도덕적·성윤리적 판단을 전제로 하고 있다. 성을 파는 사람에게 윤리의 타락을 강조하고 성을 사는 사람에게 즐거움을 강조하는 용어이다. 윤락은 성매매 여성을 윤리적으로 타락한 여자로서 사회적 낙인을 찍게 할 수 있으며, 성을 매개로 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사람의 범죄를 은폐할 수 있다.

1990년대 이후부터 윤락행위 용례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면서 “매매춘(買賣春)”이라는 용어를 등장하였다. 성매매를 도덕주의적 관점으로부터 교환관계라는 사회경제적 관점으로 대체한 것으로 성을 파는 여성과 구매하는 남성이 공존한다는 점을 부각시키기 위하여 선호되었다. 하지만 매매춘이라는 용어는 매매되는 성을 봄(春)으로 보고 있어 오히려 성매매를 자연적인 것, 금지할 수 없는 것으로 왜곡하여 성매매로 인해 발생하게 되는 문제를 자연스러운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 개연성을 지니고 있다. 그리고 성

판매자와 성구매자의 양자관계에 초점을 두면서 중간매개자가 비가시화 되고 성매매의 사회구조적인 성격이 은폐 되었다.

그러나 최근 사용되는 성매매(性賣買)는 성의 상품화란 사회문화적 현상을 드러내는 개념으로 범죄현상이라는 금지주의적 입장을 반영하고 있으며, 2004년 3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법률 제7196호)과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7212호)이 제정되고, 그 해 9월에 시행되면서 기존의 ‘윤락’ 및 ‘매매춘’이라는 용어는 ‘성매매’로 통합되었다.

성매매에 대한 법적 정의는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 약속하고 성교행위나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성교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으로 그 개념을 규정하고 있다<sup>11)</sup>. 즉 성매매는 성적 행위에 대해 금전적 대가를 지불하고 성적 서비스를 받는 거래를 통칭한다.

<표6> 성매매 유사개념

용어	정의	관점	규정의 특징
윤락 (淪落)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목적으로 성행위를 하는 것(윤락행위등방지법)	도덕적	① 성기접촉에 의한 성행위에 한정 ② 성매매를 ‘문란한 성관계’로 규정 ③ 문제의 초점을 윤락여성에게 둠 ④ 윤락여성에 대한 도덕적 낙인효과 ⑤ 사회적 필요악 또는 ‘즐거움’을 강조
매매춘 (買賣春)	‘윤락’과 동일한 의미 사고 파는 행위(買春/賣春) 강조	경제적	① ‘윤락’과 마찬가지로 성기접촉에 의한 성행위에 한정 ② 성매매를 가능케 하는 중간매개자의 존재 비가시화 효과 ③ 성판매자와 구매자의 양자관계로 해석 ④ 성매매를 봄(春)으로 자연주의화하여 사회구조적 문제 은폐
성매매 (性買賣)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 약속하고 성교행위나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성교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성매매방지법)	사회·문화적	① 성매매 = 범죄현상 ② 인간의 신체와 감정이 성상품화 되고 있음을 가시화 ③ 성이 거래와 매매의 대상이 되고 있음을 강조 ④ 성판매자, 성구매자, 알선업주와 포주의 삼자관계로 해석 ⑤ 여성의 인권에 대한 억압을 드러냄

\* 출처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성매매실태 및 경제규모에 관한 전국조사」, 여성가족부.

11)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장 제2조(정의) 1. “성매매”라 함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 약속하고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한다. 가. 성교행위 나.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성교행위 2. “성매매알선등행위”라 함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가.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 나.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다.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

“성매매”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법률 제10261호, 2010. 4.15, 타법개정)」에서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약속하고 성교행위,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성교행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한다.

또한 "성매매알선등행위"는 성매매를 알선·권유·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하며,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는 성을 파는 행위 또는 형법 제245조의 규정에 의한 음란행위를 하게 하거나, 성교행위 등 음란한 내용을 표현하는 사진·영상물 등의 촬영대상으로 삼을 목적으로 위계·위력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대상자를 지배·관리하면서 제3자에게 인계하는 행위와 이를 위하여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대한 장애가 있는 자나 그를 보호·감독하는 자에게 선불금 등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약속하고 대상자를 지배·관리하면서 제3자에게 인계하는 행위 또는 행위가 행하여지는 것을 알면서 목적이나 전매를 위하여 대상자를 인계받는 행위, 행위를 위하여 대상자를 모집·이동·은닉하는 행위를 할 경우 해당된다.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도 3년마다 국내외 성매매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국가 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초·중·고등학교의 장, 또는 공공단체의 장은 성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 함양과 성매매 방지 및 인권보호를 위하여 성매매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 (2) 성매매의 유형별 특성

성매매의 유형은 시대적 변화와 구조적 특징을 기준으로 크게 전통형 성매매와 산업형 성매매, 그리고 기타(비고용) 성매매로 구분하기도 하며 업소형과 비업소형으로 구분하기도 한다.

<표7> 성매매의 유형별 특성

유형	주요 특성	업소형태	내 용
전업형 성매매 (전통형)	성매매가 일차적 업종인 경우(주류판매를 할 수 있지만, 성매매가 주된 목적이라면, 이에 해당됨)	대규모 성매매 집결지	서울 용산, 청량리588, 영등포, 미아리텍사스, 부산 완월동, 인천 학익동, 대구 자갈마당 및 용주골 등 기지촌
	특정 성매매 밀집지역으로 가시화 여성은 성매매를 통해서만 생계유지 업주와 종사 여성간에 법률적 성격이 모호함 근로 계약의 성립 불가능	소규모 성매매업소	군소규모의 유흥장소로 널리 알려지지 않는 지역들 (흔히 '판자집' 또는 '벌집', '펍푸집' 이라고 알려진 장소들)
겸업형 성매매 (산업형)	본래 업종의 서비스와 더불어 2차 서비스 형태로 성매매를 제공·알선 업소의 서비스를 매개로 업소 내 또는 업소 밖에서 이루어지는 성매매	식품접객 업소	휴게음식점(다방), 일반음식점(카페, 레스토랑, 인삼 찻집), 단란주점, 유흥주점(룸살롱, 외국인 관광클럽)을 통해 이루어지는 성매매
	근로계약 성립가능 및 계약된 근로내용은 형식적으로 합법적 최근에는 업소에서 종사여성을 직접 고용하는 방식보다는 보도방 등 인력공급 업체로부터 고객의 수요에 따라 일시적으로 공급받는 방식으로 성매매를 알선·매개하는 형태로 변화	공중위생 업소	호텔이나 여관 등의 숙박업소, 사우나, 증기탕 등의 특수목욕장 업소, 등에서 이루어지는 성매매
	또한 업소가 타 업소에 자기가 관리하고 있는 여성을 접대부로 일시 공급하여 소개료를 받아 챙기는 식(일종의 직업 소개처럼)의 영업 전략도 등장	마사지 업소	안마시술소 및 스포츠마사지 업소 등에서 안마사 및 보조원 등을 통해 이루어지는 성매매 최근 출장마사지의 형태로 전자적 매체를 통해서 고객과 직접 연결시켜 주기도 함
인적 매개형 성매매	구인자와 구직자를 연결·소개시키는 방식 또는 남녀교제를 주선하는 방식으로 성매매를 알선·매개하는 형태	인력 공급업체 (보도방)	각종 유흥업소 및 노래방 또는 호텔·여관 등에 접대부(매춘여성)를 직접 공급하여 성매매 알선 또는 성매매 영업을 하는 형태
	일종의 출장형 성매매 인력공급자(소개자)가 주도적으로 여성을 지배·공급하는 성매매 영업자형과 단순히 소개료(알선료)만을 챙기는 소개자형으로 구분	이벤트사	주부, 직업여성, 미혼여성, 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직업상담소, 결혼상담소, 이벤트사 등을 차려 놓고, 성매매를 알선 또는 영업형태
		연예계 성매매	특정인의 소개로 여자 연예인, 고급 골걸들이 사회고위층을 상대로 하는 성매매
전자 알선형 성매매	회원 간에 만남, 교제를 주선하는 방식 성매매를 알선·영업하는 형태 전화서비스업체 또는 인터넷 사이트설치가 주도적으로 성매매 영업을 하는 경우와 단순히 서로 연결되도록 전자매체나 연결 장소만을 제공하여 소개자 형태에 그치는 경우로 나눔	전화방 /폰팅 /화상대화방	전화방/ 080전화서비스 및 폰팅/ 화상대화방 등을 통해 남성회원과 여성회원을 연결성매매를 알선 매개하는 경우와 전문 성매매여성을 확보하여, 출장성매매 서비스를 매개 영업하는 경우가 있음
		사이버 성매매	사이버 공간 내 성매매 알선사이트나 채팅 등을 통하여 하는 이루어지는 성매매 (특히 원조교제)

유형	주요 특성	업소형태	내 용	
비 업 소 계 별	직거래형 성매매	성매매 중사여성이 직접 고객을 찾아 나서서 1:1로 성매매를 하는 형태	박카스 이즘마/ 들병이	등산객, 운전수, 탑골공원의 노인 등 대상으로 직접 호객하는 성매매
			거리 성매매	고속도로나 거리에서 이루어지는 성매매
			계약동거형 성매매	미군 및 장기체류 외국인과의 지속적 성적 서비스와 가사서비스 제공형태의 성매매

\* 자료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성매매실태 및 경제규모에 관한 전국조사」, 여성가족부, 2002.

### (3) 성매매에 대한 잘못된 통념

성매매에 대한 잘못된 통념은 성매매가 여전히 가부장적인 입장에 놓여 있음을 드러내는 것으로 우선 “성매매는 사회 필요악”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다. 살인과 같은 범죄들 역시 오랜 역사가 있지만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근절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결국 성매매가 필요악이라는 입장을 표방한다면 '누가 필요하고 누가 피해를 입고 있는가'를 우선 전제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성매매가 없으면 성폭력이 늘어날 것이다”이다. 이는 나폴레옹이 1827년 "성매매를 폐지하면 많은 남성들이 성욕을 주체하지 못해 길거리에서 아무 여성이나 공격할 것"이라고 한 말을 그대로 인용한 것으로 이는 "남성은 성욕을 스스로 통제하기 힘들기 때문에 여성이 이를 위한 성적 서비스를 담당해야 한다"는 억지 주장이라는 입장이다. 실제 성매매와 성폭력 발생률은 오히려 정비례하고 있는데, 국제적으로 한국의 경우 이미 성산업이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했다는 발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폭력 발생률이 세계적으로 높게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성산업 확대=성폭력 증가'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결국 성매매를 인정하는 것은 성폭력을 방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모든 여성을 성폭력의 위험에 노출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남성의 성적욕구는 반드시 충족시켜야 한다’는 통념으로 성관계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죽은 남성은 지금까지 없지만, 많은 여성들이 '남성의 성욕을 충족시키기 위한' 성매매로 죽었다. 캐나다 포르노그래피 및 성매매 특별위원회(1985)가 발표한 자료로 성매매 여성의 사망률이 전체 인구의 사망률보다 4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다른 통념은 '장애남성과 같은 소외계층 남성의 성욕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성매매가 필요하다'는 것으로 이 논리를 토대로 성매매가 필요하다면 장애여성 역시 '성구매의 권리가 있다'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결국 다시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차별로 성매매를 통해 성욕을 해소할 권리를 인정하는 것으로 소외계층의 '인권'을 이용하여 또 다른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다섯 번째 잘못된 통념으로 '성매매 여성은 성매매를 즐긴다'와 '성매매 여성은 쉽게 돈을 많이 번다'로 성매매 여성에 대한 입장이다. 우선 전자는 성 구매자가 자신의 성매매 행위를 합리하는 주장에 불과한 것이다. 성매매 여성들의 증언을 통해 제공되는 성적서비스는 거의 대부분 폭력적이며, 모욕적이고 가학적인 성행위들로 일종의 성적 폭력으로써 인식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는 것이다. 여성이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것처럼 유인한 산업일 뿐이기 때문이다. 실제 표면적으로 많은 돈을 많이 버는 것처럼 보이지만 높은 이자와 각종 벌금, 옷값 및 방값 등 다양한 형태의 채무로 성매매를 강요함에 따라 그로 인한 질병,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으로 신체적, 정서적, 경제적으로 더욱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된다. 결국 돈을 벌어 성매매를 그만두겠다는 생각은 오히려 쌓여가는 빚에 눌러 계속적으로 성매매를 강요당하는 상황으로 이들을 몰아가게 된다. 이에 대하여 남성이 성매매 여성을 착취하는 것이 아니라 성매매 여성이 남성에게 오히려 피해를 입히고 있다는 통념이 함께 거론된다. 이는 성매매 여성이 성 구매자로부터 돈을 받기 때문에 더 우위에 있다는 일반적인 통념이지만 성매매 여성 폭력과 학대, 비인간적 처우에 노출되어 있는 피해자로 바라봐야 한다.

여섯 번째 '성매매를 선택한 것은 여성이다'라는 책임론이다. 그러나 여성들이 성매매를 '선택'하였다 하더라도 '다른 대안이나 선택권이 없는 상황에서의 어쩔 수 없는 선택'으로 성매매 산업에 종사하는 여성은 미성년일 때부터 시작한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성매매를 금지하는 성매매를 더욱 음성화시키고 확산시킨다'로 이른바 '풍선효과' 담론이다. 우리사회에서 가장 많이 논의되고 있는 통념으로 성산업의 음성은 오히려 이윤이 극대화되는 장치이다. 성매매가 일상화된 나라에서는 성 구매자들로부터 새롭고 자극적인 성적서비스가 강요되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음성적인 성산업 및 알선업자들이 다양하게 생겨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더 부추기는 것으로 보고있는 것이다.

#### (4) 성매매에 대한 국제협약

성매매에 대한 법제도는 금지주의, 규제주의, 합법화 등 3가지 입장으로 정리를 해 볼 수 있다.

우선 금지주의입장은 성매매를 위법으로 규정하여 이를 위반하는 사람을 처벌하는 것으로 성 판매자, 성 구매자,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모두 또는 일부 금지하는 정책으로 공산주의적 금지주의와 자본주의적 금지주의로 나뉜다.

공산주의적 금지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는 중국, 베트남으로 성매매를 자본주의 시장의 병폐로 이를 착취의 한 유형으로 금지하고 있다. 자본주의적 금지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 미국, 필리핀, 태국, 스리랑카 등이 있으며, 이들 국가 가운데 우리나라와 미국 등 몇 개국만이 성매매를 처벌하는 입법조치를 마련하고 있다.

두 번째 규제주의 입장은 일정한 조건을 가지고 성매매를 정부가 관리하고 규제하는 것으로 특정 지역 허용, 허가 받은 성매매 종사자의 영업, 공인된 성매매업소 지정, 성병관리 등 감독과 규제를 통해 부분적으로 성매매를 인정하는 입장이다. 여기서도 노상 성매매는 불법으로 간주하는 입장이다.

영국, 오스트리아, 독일, 아일랜드, 파나마 등은 국가가 지정한 장소에서 용인하고 있으며, 의사의 감독을 받거나 특정된 지역에서만 허가하고 있다. 일부 국가에서는 성매매 자체를 위법으로 보고 있지 않지만 선전이나 광고 활동 등은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으며, 정기적인 성병검사와 소득세 등을 부과하기도 한다.

마지막으로 합법화 입장은 성매매 종사자를 직업으로 인정하고 자유로운 영업활동의 보장과 세금 징수 등 간섭을 하지 않는데 프랑스가 대표적으로 해당된다. 여기서는 강제적인 성매매와 자발적인 성매매를 분리하자는 입장으로 강제 성매매의 경우 여성인권에 대한 침해로 마땅히 보호 받아야 하지만 자유의사에 의한 성매매는 존중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3가지 입장을 토대로 국제 협약이 1949년 “인신매매금지 및 타인의 매춘행위에 의한 착취금지에 관한 협약 및 최종의정서(Convention for the Suppression of the Traffic in Persons and of the Exploitation of the Prostitution of Others and Final Protocol)<sup>12)</sup>와 1967년 여성차별철폐협약(CEDAW :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sup>13)</sup>이 있다. 그 밖에 북경여성행동강령에서도 매춘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12) 의정서는 1950년 3월 21일 뉴욕에서 서명을 위해 개방하였으며, 1951년 7월25일 발효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1961년 11월 8일 국회동의를 통해 1962년 2월 13일 가입서 기탁을 하였으며, 1962년 5월 14일 조약 제93호로 발효되었다. 28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참고 <http://zvon.org/law/r/un-prostitution.html>)

13) CEDAW는 1967년 여성차별문제를 중심으로 유엔에서 채택된 것으로 1979년 유엔총회를 통해 법적 구속력을 지닌 협약으로 1981년 발효되었다. 협약에서 여성에 대한 차별을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시민적 또는 기타 모든 분야에 있어서 혼인여부와 상관없이 남녀동등의 기초 위에서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인식, 향유 또는 행사하는 것을 저해하거나 무효화하는 효과 또는 목적을 가지는 성에 근거한 구별, 배제 또는 제한을 의미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국제문서로써 가장 다양한 영역에서 국가가 취해야할 남녀평등조치이다. 우리나라는 1983년 협약에 비준 하고 1985년부터 발효되었다. 비준 당시, 제9조 "국적법에서의 평등"은 국적법에, 제16조(가족법에서의 평등)의 c, d, f, g 조항은 가족법에 저촉되어 유보 조치하였으나 현재 제16조 g조항을 제외하고 유보조치가 철회되었으며, 16g항에 대한 유보는 여전히 정부에서 검토 중이다.

※ 협약 제9조

“당사국은 여성이 국적을 취득, 변경 또는 보유함에 있어서 남성과 동등한 권리를 부여하여야 한다. 당사국은 특히 외국인과의 결혼 또는 혼인 중 처에 의한 국적의 변경으로 처의 국적이 자동적으로 변경되거나 처가 무국적으로 되거나 또는 부의 국적이 처에게 강제되지 아니하도록 확보하여야 한다. 당사국은 자녀의 국적에 관하여 남성과 동등한 권리를 여성에게 부여하여야 한다.”

※ 협약 제16조

- ▲c항 "혼인 중 및 혼인을 해소할 때의 동일한 권한과 책임"
- ▲d항 "부모의 혼인상태를 불문하고 자녀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 부모로서의 동일한 책임과 권리"
- ▲f항 "아동에 대한 보호, 후견, 재산관리 및 자녀입양 등에서의 동일한 권리와 책임"
- ▲g항 "가족성을 선택할 권리 등"

#### 4) 아동성폭력

##### (1) 아동성폭력의 개념

아동 성폭력은 성폭력특별법 제 8조 2항에서 어린이 성폭력의 개념을 ‘만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아동 보호 및 아이들이 성적 도구로 위협에 노출되는 것을 보호하는데 있다. 특히 어린아이들의 경우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의식이 희박하기 때문에 성인에 의한 성폭력에 이용당할 우려가 매우 높기 때문에 이를 처벌하기 위하여 마련하였다. 임상에서는 “발달단계가 앞선 사람이 발달단계가 늦은 사람에게 성적 만족을 취하기 위해 일어나는 성적행위”를 아동성학대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은 실제나이(생활연령)가 성인이지만 정신연령이 낮은 정신지체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법적인 규정보다는 포괄적인 규정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아동성폭력의 경우 18세 미만의 사람을 보호하거나 교육 또는 치료하는 시설의 책임자 및 관련종사자에게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이 법 제5조 내지 제10조, 형법 301조 및 301조의 2의 범죄의 피해자인 사실을 안 경우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신고의 의무(법 제22조의 5)를 규정하고 있다.

아동성폭력은 최근 매우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으며, 성폭력 피해의 정도가 매우 심각해 아동들에게 정신적인 장애를 일으키고 있다는 결과도 보고되고 있다. 2006년 한 보도 자료에 따르면 성폭력 피해 아동 가운데 41.1%는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를 보이고, 35.6%는 부모와 자녀 관계에 있어 문제를 나타내며, 13.2%는 과도한 자위행위 등 부적절한 성적행동을 드러내고 있다고 보도하였다. 7세 이하의 아동이 성폭력 피해자로 차지하는 비율이 8%이며, 가해자 연령 역시 8~13세 아동이 6%로 가해자와 피해자의 연령이 모두 낮아지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연합뉴스, 2006. 11.30).

##### (2) 아동성폭력 징후

아동들의 경우 성과 관련되어 성학대를 당한 경우 비교적 뚜렷한 증상들을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증상은 학대의 상황과 함께 어떻게 대처하는가를 살펴볼 수 있는 징후로 볼 수 있다. 징후를 가진 경우는 아동들에게 일어난 성학대를 알 수 있지만 징후가 없는 경우 역시 성학대를 지나칠 수 없으므로 아동들에게 일어나는 징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 ① 의료적 지표

의료적 지표로 아동의 임신과 성병이 가장 두드러지는 신체적인 지표이다. 그 밖에 생식기 증거로 아동에게 성기의 이물질, 상처나 긁힌 자국, 찢어진 상처, 붉은 홍진, 염증, 감염 등을 발견할 수 있으며, 항문증후로 손상이나 찰과상, 착색, 홍진 등이 관찰된다. 구강증후로 입천장 손상, 임질 등의 징후를 나타낸다.

#### ② 심리·사회적 지표

우선 성적인 부분에 대한 아동들의 행위로 대부분 어려서 성학대 피해를 입은 아동들에게 볼 수 있다. 그럼으로 성적인 묘사를 하거나, 성지식에 대한 말을 하거나, 장난감 등을 가지고 성적인 상호관계를 갖거나 자위행위 등을 통해 찾아볼 수 있으며, 아동의 직접적인 진술이 성적 지표가 된다.

비성적인 지표는 친구관계 부적응, 학교 부적응, 평소와 다른 행동 등에서 징후를 발견할 수 있다.

#### ③ 장기적인 후유증상

장기적인 후유증상 심리적인 후유증, 신체적 후유증, 성적후유증, 사회적 후유증 등으로 구분된다.

우선 심리적 후유증은 불안, 공포, 강박행동, 분노와 우울증, 특정 인물과 장소 회피, 퇴행, 악몽과 불면, 남성 혐오, 자신 학대 행동 등으로 표출된다. 신체적 후유증은 초기 성기손상, 성병감염, 두통, 복통, 골반 동통, 성기 이상 등으로 임신과 임신중절, 불임 등의 징후를 보이기도 한다. 성적 후유증은 성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 지속적으로

피해를 당하는 경우 성에 대한 공포와 혐오, 성불감증 등의 경향을 보이며, 마지막 사회적 후유증은 사회활동기피 알코올이나 약물 오남용으로 중독 등의 증상을 보이기도 한다.

### (3) 아동성폭력의 후유증

아동성폭력의 후유증은 피해 후 바로 나타나는 경우와 일정시간이 지나고 나타나는 경우, 연령에 따라 후유증의 증상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우선 시간적으로 급성과 만성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8> 아동성폭력 후유증(급성, 만성)

구분	급성	만성
증상	해리현상(혼란스러움/기억상실) 수면장애(악몽, 야경증) 신경과민(신경질, 짜증, 안절부절) 공포감(가해자에 대한 공포) 울음 섭식장애(식욕부진 또는 식용과다) 수치심, 부끄러움 분노 죄책감, 열등감, 자기혐오 의욕상실, 억압	낮은 자존감(무력감) 신경장애(만성우울증) 수면장애(불면증) 퇴행행동 통증(두통, 복통, 근육통 등) 자위행위 조속한 행동 이성에 대한 지나친 두려움 집중력저하, 학업성적 저하, 등교거부 또래관계 갈등

<표9> 연령별 아동성폭력 후유증

구분	학력전기	학령기
증상	신제적 증상 표현 배변장애 퇴행행동 수면장애 분리불안 심화 성적인 놀이 및 성에 대한 관심 증가 자위행위 증가	우울증 반사회적인 행동 신체에 대한 학대 성에 대한 지나친 지식 집중력저하, 학업성적 저하 또래관계 갈등 그 밖에 학력전기 모든 증상들

그 밖에 정신의학적인 증상은 외상후스트레스 장애, 우울증, 불안장애, 분리불안장애, 신체화장애(두통, 복통, 근육통 등 우울 불안이 신체화 된 모든 증상), 섭식장애, 반항성장애(부모와 가해자, 권위자 등에 대한 공격성, 분노, 적대적 행동), 품행장애 등으로 표출되기도 한다.

## 5) 성희롱

### (1) 성희롱의 개념

성희롱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性的) 언동(言動) 등으로 상대방에 대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하거나, 상대방이 성적 언동이나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말한다(「여성발전기본법 제3조 제4호」).

성희롱에 대하여 대두되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로 성희롱은 성차별적인 사회구조 및 가부장제적인 가치관이 여전히 개선되고 있지 않은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등장하였다. 성희롱에 대하여 남성은 실수로 인식하고 있는 반면 성희롱의 피해를 입은 여성의 행실 잘못이라는 인식이 있지만 피해사실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인 인식으로 피해 사실이 은폐되면서 끊임없이 반복되는 성희롱의 피해를 줄이는 노력에서 작동되고 있다. 업무와 연관되어 직장상사 또는 동료, 고객 등이 성적 접촉을 시도하더라도 강력하게 반대의사를 밝히지 못하는 구조가 여성들에게 모순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설령 반대의사를 밝히더라도 일방적인 가해자 위주의 판단으로 오히려 성희롱 피해자가 가해자 유발론의 출발점이 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성희롱에 대한 문제를 공식적으로 제기하더라도 합리적인 해결을 위한 창구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피해자, 가해자, 조사자 등이 모두 같은 직원으로 사실을 은폐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를 근절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창구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성희롱에 대한 법적인 개념으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타)일부개정 2010.6.4 법률 제10339호] 제2조의 2항 “직장 내 성희롱”으로 명시되어 있다. 그 밖에 국가인권위원회법에도 규정이 되어 있으며, 일반인들 간의 성희롱에 대해서는 노인복지법([일부개정 2010.1.25 법률 제9964호]) 제39조의 9의 제2호는 “노인(65세 이상)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 성희롱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대한 벌칙은 제55조3(벌칙)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아동복지법([일부개정 2010.6.4 법률 제10339호])은 제29조의 2에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성폭행 등의 학대”를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이에 대하여 제40조의 2호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상습적일 경우(제40조의 2) 죄가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최근 성희롱의 가해자가 남성 중심에서 여성이 성희롱 가해자로 등장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사회활동으로 남성과 여성이 빈번하게 사회관계를 형성하게 되면서 왜곡된 성 인식으로 성희롱 가해자가 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면서 성희롱에 대한 명확한 인지 특히 상대방에 대한 인권으로써 인지할 필요가 있다. 또한 성희롱과 강제추행, 성폭행(강간) 등이 모호한 개념으로 혼동을 빚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념을 정리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표10> 성희롱, 강제추행, 강간의 개념<sup>14)</sup>

구분	성희롱	강제추행	강간
개념	업무관련, 성적불쾌감, 언동 등	폭행·협박 사람에게 대해 추행	폭행·협박 부녀에 대해 간음
형사상	원칙 없음 - 언어적 성희롱의 경우: 모욕죄, 명예훼손죄 - 시각적 성희롱의 경우: 통신매체음란죄 - 신체적 성희롱의 경우: 강제추행죄,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죄 등	원칙대로 적용	원칙대로 적용
민사상	원칙대로 적용	원칙대로 적용	원칙대로 적용
고충처리 기관	있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국가인권 위원회	진정 가능(있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노동위원회	있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14) 「2009 성희롱 예방교육 전문강사 전문과정 자료집」.2009.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p61. 재구성

## (2) 성희롱에 대한 잘못된 통념

성희롱의 잘못된 통념으로 우선 ‘성희롱은 사소한 문제이다’로 인식하는 것으로 조직 내에서 성희롱을 경험하게 될 경우 모욕감이나 수치심 위협은 물론 업무수행에도 영향을 미치거나 직장을 그만 두는 등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심각한 문제이다.

다음으로 ‘성적인 농담이나 가벼운 접촉은 직장생활의 활력소가 된다’는 입장으로 성적인 농담의 경우 듣는 사람에게 수치심은 물론 모욕감을 줄 수 있고, 그 대상자인 경우 업무 수행의 방해는 물론 업무능력 저하까지 가져오게 되어 조직 내 생산성을 오히려 저하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성희롱은 의도적이지 않고 친밀감의 표현’이라는 통념이 있는데 이를 친밀감으로 보는 것은 여전히 남성중심의 문화에서 일어나는 행태로 관계를 무시하고 자의적이고 일방적인 해석에서 나타나는 의식이다. 최근 양성평등 의식이 매우 강화되면서 평등문화 확산이 이루어지는 만큼 조직 내 다른 동료의 감정을 먼저 고려할 필요가 있다.

네 번째로 ‘직장에서 일어나는 성희롱은 무시하면 그만이다’로 자신에게 일어나거나 타인에게 가해지거나 일어나는 성희롱에 대하여 모르는 척 지나치거나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행동하게 될 경우 문제 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소극적인 행동으로 오히려 성희롱은 당연시 여겨지고, 직장 내 성희롱을 지속시키는 결과를 낳게 되기 때문이다. 결국 성희롱이 발생하거나 당했을 경우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교정하려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성희롱은 여성의 과다한 노출이 유발시켰다’라는 통념으로 성희롱의 피해는 모든 연령대에서 발생할 수 있으므로 피해자의 과다한 노출이 원인이 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성희롱의 발생요인은 개인적인 문제나 생물학적인 성차이에서 발생하기보다 사회적인 문제로써 접근해야 한다.



### (3) 성희롱의 후유증

성희롱의 후유증은 피해자, 가해자, 직장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우선, 피해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육체적, 정신적, 심리적 고통과 스트레스 및 근로의욕과 능률 및 업무수행, 대안관계 등의 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 심각한 경우 실직까지 연결될 수 있다.

가해자의 경우 도덕적 비난, 명예손상과 징계, 형사처벌, 손해 배상 등의 부담이 있다.

직장의 경우 직원간, 노사간, 남녀간의 갈등 발생이 증폭되며, 화합이 어려워지면서 생산성의 악영향을 초래하게 된다. 직원들의 심리적 위축으로 업무에 지장을 미치며, 법적 소송 등으로 시간과 비용 등 경제적 부담의 초래, 인력소모, 직장이미지 손상 등 손해를 입게 된다.

결국 성희롱은 피해 당사자와 가해자, 속하고 있는 직장 등 모두가 손실을 입게 된다.

## 3. 지역 언론보도를 통해 본 여성에 대한 폭력 보도 실태

지역 언론에서 여성에 대한 폭력으로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으로 구분 보도 행태를 분석함으로써 지역에서 어떻게 여성에 대한 폭력이 전달되고 있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지역 언론으로 제주의 소리, 제민일보, 한라일보, 제주일보 등 온라인과 지면으로 보도된 여성에 대한 폭력을 2007년부터 2010년 6월 30일까지를 기준으로 6개로 구분 각각 보도 행태를 살펴보고자 한다.

### 1) 가정폭력 보도 실태

가정폭력과 관련한 보도 건수는 총 122건으로 정책 및 실태보도가 전체 보도의 58.2%를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가정폭력 관련 NGO의 행사 보도 13.9%, 기획기사 및 사설 13.1%, 검찰·경찰의 사건 보도가 전체 보도의 12.3%, 기차 0.8% 순으로 나타났다.

<표11> 연도별 가정폭력 기사 보도 건수(2007~2010.6.30)

(단위 : 건, %)

연도	검찰·경찰 사건보도	가정폭력 관련 NGO 행사홍보	정책 및 실태 보도	외부인사 기교	기획기사 사설	기타	합계
2007	9	3	25	2	6	0	45
2008	5	8	14	0	6	1	34
2009	1	5	24	0	3	0	33
2010	0	1	8	0	1	0	10
<b>평균</b>	<b>3.75</b>	<b>4.25</b>	<b>17.75</b>	<b>0.50</b>	<b>4.00</b>	<b>0.25</b>	<b>30.50</b>
<b>계</b>	<b>15</b>	<b>17</b>	<b>71</b>	<b>2</b>	<b>16</b>	<b>1</b>	<b>122</b>
<b>%</b>	<b>12.3</b>	<b>13.9</b>	<b>58.2</b>	<b>1.6</b>	<b>13.1</b>	<b>0.8</b>	<b>100.0</b>

신문사별로 살펴보면 제민일보가 가장 많은 보도를 했으며, 다음으로 제주일보, 한라일보 순으로 나타났으며, 제주의 소리가 가정폭력에 대하여 가장 낮은 빈도를 나타내고 있다.

<표12> 신문사별 가정폭력 보도 건수(2007~2010.6.30)

(단위 : 건, %)

연도	제민일보	제주의 소리	한라일보	제주일보	합계
2007	13	6	8	18	45
2008	18	2	3	11	34
2009	13	2	6	12	33
2010	3	0	2	5	10
<b>계</b>	<b>47</b>	<b>10</b>	<b>19</b>	<b>46</b>	<b>122</b>
<b>%</b>	<b>38.5</b>	<b>8.2</b>	<b>15.6</b>	<b>37.7</b>	<b>100</b>

## 2) 성폭력 보도 실태

성폭력 보도 건수는 591건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검찰·경찰의 사건 보도가 84.9%로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정책 및 실태 보도 11.7%, 기획기사 및 사설, 성폭력 관련 NGO 행사 홍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가장 보도 빈도가 높은 시기는 2008년으로 성폭력 관련 다양한 보도가 되었다. 정책관련 보도는 2009년 가장 높은 빈도를 나타내고 있다.

<표13> 연도별 성폭력 보도 건수(2007~2010.6.30)

(단위 : 건, %)

연도	검찰·경찰 사건보도	성폭력 관련 NGO 행사홍보	정책 및 실태 보도	외부인사 기고	기획기사 사설	기타	합계
2007	142	0	15	1	3	0	161
2008	186	1	16	1	1	0	205
2009	112	1	23	3	1	3	143
2010	62	1	15	1	3	0	82
<b>평균</b>	<b>125.50</b>	<b>0.75</b>	<b>17.25</b>	<b>1.50</b>	<b>2.00</b>	<b>0.75</b>	<b>147.75</b>
<b>계</b>	<b>502</b>	<b>3</b>	<b>69</b>	<b>6</b>	<b>8</b>	<b>3</b>	<b>591</b>
<b>%</b>	<b>84.9</b>	<b>0.5</b>	<b>11.7</b>	<b>1.0</b>	<b>1.4</b>	<b>0.5</b>	<b>100.0</b>

신문사별로 살펴보면 제주의 소리가 가장 많이 보도 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한라일보, 제민일보, 제주일보 순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보도 건수 역시 2008년을 정점으로 보도 빈도가 낮아지고 있으며, 이는 성폭력 보도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의 감소로 볼 수 있다.

<표14> 신문사별 성폭력 보도 건수(2007~2010.6.30)

(단위 : 건, %)

연도	제민일보	제주의 소리	한라일보	제주일보	합계
2007	37	59	45	20	161
2008	43	71	49	42	205
2009	29	59	41	14	143
2010	22	19	22	19	82
계	131	208	157	95	591
%	22.1	35.2	26.6	16.1	100

### 3) 성매매 보도 실태

성매매 관련 보도는 건수는 456건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검찰·경찰의 사건 보도가 51.5%로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정책 및 실태 보도 33.1%, 성매매관련 NGO 행사 홍보 9.4%, 기획기사 및 사실, 기타, 외부인사 기고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2007년으로 178건으로 가장 많이 보도가 되었으며, 매년 보도 건수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15> 연도별 성매매 보도 건수(2007~2010.6.30)

(단위 : 건, %)

연도	검찰·경찰 사건보도	성매매 관련 NGO 행사홍보	정책 및 실태 보도	외부인사 기고	기획기사 사실	기타	합계
2007	94	16	60	0	7	1	178
2008	60	16	45	3	4	4	132
2009	75	10	33	2	3	0	123
2010	6	1	13	0	0	3	23
평균	58.75	10.75	37.75	1.25	3.50	2.00	114.00
계	235	43	151	5	14	8	456
%	51.5	9.4	33.1	1.1	3.1	1.8	100.0

제주의 소리가 가장 보도 빈도가 높고, 한라일보, 제민일보, 제주일보 순으로 나타났으며, 2008년을 정점으로 보도 빈도가 낮아지고 있다.

<표16> 신문사별 성매매 보도 건수(2007~2010.6.30)

(단위 : 건, %)

연도	제민일보	제주의 소리	한라일보	제주일보	합계
2007	38	50	53	37	178
2008	47	23	31	31	132
2009	32	26	45	20	123
2010	12	3	5	3	23
계	129	102	134	91	456
%	28.3	22.4	29.4	19.9	100

#### 4) 성희롱·성추행 보도 실태

성희롱·성추행 관련 163건으로 조사되었으며, 검찰·경찰의 사건 보도가 76.1%로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정책 및 실태 보도 12.9%, 기획기사 및 사설, 외부 인사 기고 등으로 나타났다. 보도 빈도가 높은 시기는 2007년을 정점으로 관련 보도가 빠르게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17> 연도별 성희롱·성추행 보도 건수(2007~2010.6.30)

(단위 : 건, %)

연도	검찰·경찰 사건보도	성희롱관련 NGO행사홍보	정책 및 실태 보도	외부인사 기고	기획기사 사설	기타	합계
2007	39	0	13	1	2	0	55
2008	33	0	10	0	2	0	45
2009	34	0	4	1	0	0	39
2010	18	0	5	1	0	0	24
평균	31.00	0.00	8.00	0.75	1.00	0.00	40.75
계	124	0	32	3	4	0	163
%	76.1	0.0	12.9	1.2	2.5	0.0	100.0

신문사별로 살펴보면 제주의 소리가 가장 많은 보도를 했으며, 제주일보, 제민일보, 한라일보 순으로 나타났다. 2008년을 정점으로 보도 빈도가 역시 전반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표18> 신문사별 성희롱·성추행 보도 건수(2007~2010.6.30)

(단위 : 건, %)

연도	제민일보	제주의 소리	한라일보	제주일보	합계
2007	11	28	8	8	55
2008	10	21	2	12	45
2009	3	23	5	8	39
2010	4	12	1	7	24
계	28	84	16	35	163
%	28.3	22.4	29.4	19.9	100

### Ⅲ. 지역에 있어서 여성과 폭력에 대한 인식 조사

#### 1. 조사 개요

##### 1) 조사 목적

제주도내 현재 여성 및 아동·청소년 등에 발생하고 있는 폭력의 정도와 일상적인 폭력인식, 폭력 대처 방법 등에 대한 인식을 조사함으로써 향후 제주특별자치도의 여성 폭력 근절을 위한 예방프로그램을 만드는 데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 2) 조사 기간

- 조사기간 : 2010. 11. 30 ~ 12. 13
- 조사부수 : 510부
- 조사주체 : 제주발전연구원 사회조사센터

##### 3) 개요

###### (1) 표본설계(Sample Design)

- ① 모집단(Population) : 제주도민(20세~50세)
- ② 표본추출방법 : 임의(편의)추출
- ③ 표본 크기(Sample size) : 510부
- ④ 조사 방법 : 면접원에 의한 1:1 개별면접조사

- ⑤ 자료수집 도구 : 구조화된 설문지
- ⑥ 실사 기간 : 2010. 11. 30 ~ 12. 5
- ⑦ 조사장소 : 제주 전지역

## (2) 자료 분석(Data Analysis)과 변수

검증을 거쳐 완성된 질문지는 Editing, Coding, Punching 과정을 거쳐 사회과학을 위한 패키지인 SPSS PC+ 14(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 Program으로 전산처리를 실시하였다.

분석의 주요변수로는 거주지, 성별, 연령, 최종학력, 직업 등이다.

## (3) 설문 내용

- 성역할에 대한 인식
- 폭력에 대한 인식
- 폭력에 대한 처벌과 수위
- 폭력 피해자 지원제도
- 폭력 예방프로그램
- 인구통계적 특성

## 2. 조사 결과

### 1) 인구통계적 특성

거주지별로 살펴보면 제주시 동지역 261명(51.2%), 서귀포시 동지역 103명(20.2%), 제주시 읍면지역 94명(18.4%), 서귀포시 읍면지역 52명(10.2%)으로 나타났으며, 성별



로 살펴보면 여성 310명(60.8%), 남성 200명(39.2%)으로 나타났다.

<표19> 응답자의 거주지와 성별

구분		빈도(명)	비율(%)
거 주 지	제주시 동지역	261	51.2
	제주시 읍면지역	94	18.4
	서귀포시 동지역	103	20.2
	서귀포시 읍면지역	52	10.2
성 별	여성	310	60.8
	남성	200	39.2
합계		510	100.0

연령별로 살펴보면 20대 172명(33.7%), 40대 142명(27.8%), 30대 135명(26.5%), 50대 이상 61명(12.0%)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학력별로 살펴보면 고졸 208명(40.8%), 대졸 175명(34.3%), 전문대졸 117명(22.9%), 중졸이하와 대학원졸 각각 5명(1.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20> 응답자의 연령

구분		빈도(명)	비율(%)
연 령	20대	172	33.7
	30대	135	26.5
	40대	142	27.8
	50대 이상	61	12.0
	합계	510	100.0

직업별로 살펴보면 학생 101명(19.8%), 서비스직 96명(18.8%), 사무직 74명(14.5%), 판매직 52명(10.2%), 자영·상공업 51명(10.0%), 전문직 43명(8.4%), 전업주부 40명(7.8%), 생산직 22명(4.3%), 농업 15명(2.9%), 무직 10명(2.0%), 관리직 5명(1.0%),

기타 1명(0.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21> 응답자의 학력과 직업

구분		빈도(명)	비율(%)
학 력	중졸이하	5	1.0
	고졸	208	40.8
	전문대졸	117	22.9
	대졸	175	34.3
	대학원졸	5	1.0
직 업	전업주부	40	7.8
	사무직	74	14.5
	생산직	22	4.3
	서비스직	96	18.8
	판매직	52	10.2
	관리직	5	1.0
	자영·상공업	51	10.0
	전문직	43	8.4
	농사	15	2.9
	학생	101	19.8
	무직	10	2.0
	기타	1	0.2
	합계	510	100.0

## 2) 성에 대한 인식

### (1) 성교육

성교육의 필요성에 대하여 “여학생에게 더 필요하다”는 질문에 보통이라는 응답이 180명(35.3%), 그렇다는 응답 193명(37.8%), 그렇지 않다는 응답 137명(26.9%)으로 성교육에 있어 상대적으로 여학생이 더 필요하다는 의견이 그렇지 않다는 의견보다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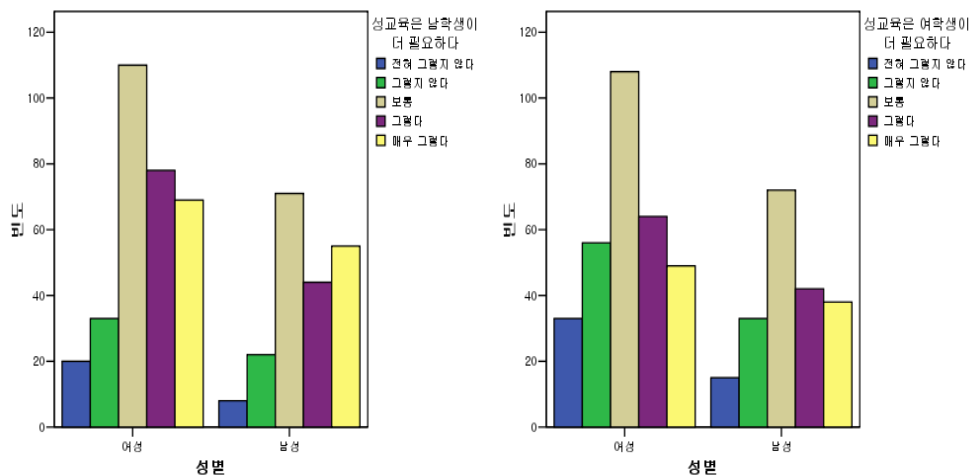
<표 22> 성교육의 필요성

구분	여학생이 더 필요하다		남학생이 더 필요하다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전혀 그렇지 않다	48	9.4	28	5.5
그렇지 않다	89	17.5	55	10.8
보통	180	35.3	181	35.5
그렇다	106	20.8	122	23.9
매우 그렇다	87	17.1	124	24.3
합계	510	100.0	510	100.0

다음 성교육은 “여학생보다 남학생이 더 필요하다”에 대하여 그렇다는 응답 246명 (48.2%), 보통이라는 응답 181명(35.5%), 그렇지 않다는 응답 83명(16.3%)으로 성교육 대상자로 남학생이 더 필요하다는 의견이 그렇지 않다는 의견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결국 상대적으로 서로 다른 성을 중심으로 성교육의 중요성이 응답이 되었으나 이를 다시 성별로 인식하는 정도를 살펴보면 성교육의 필요성의 요구는 남성에 비하여 여성이 더 많은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1> 성별에 따른 성교육의 필요성



(2) 남과 여의 서로 다른 가치관

① 남녀사이에서 여자의 “아니오”에 대한 통념

남녀관계에서 여자의 상대방에게 “아니오”라고 할 때 “사실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아도 된다”는 통념에 대하여 그렇지 않다 303명(59.4%), 보통 134명(26.3%), 그렇다 73명(14.3%)으로 나타났다. “아니오”를 긍정의 왜곡시켜 인식하기보다 있는 그대로 인식하고 있는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표23> 남녀사이에서 여자 “아니오”에 대한 통념

사실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아도 된다	빈도(명)	비율(%)
전혀 그렇지 않다	176	34.5
그렇지 않다	127	24.9
보통	134	26.3
그렇다	55	10.8
매우 그렇다	18	3.5
합계	510	100.0

이를 다시 성별로 살펴보면 여성의 경우 남성에 비하여 “아니오”라는 응답을 실제로 강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성별에 따라 격차가 있으나 대체적으로 “아니오”를 “긍정의 아니오”로 인식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② 남성의 몸(순결)에 대한 통념

남성의 몸에 대한 통념으로 남성 본인의 순결에 대하여 “총각딱지를 혼인하기 전에 떼는 것이 통과의례이다”에 대하여 그렇지 않다는 응답 278명(54.5%), 보통이라는 응답 135명(26.5%), 그렇다는 응답 97명(19.0%)으로 나타남에 따라 남성에게 통상적으로

용인되어 있는 몸에 대한 통념이 상대에 대한 존중으로 순결을 지켜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표24> 남성의 몸에 대한 통념

구분	빈도(명)	비율(%)
전혀 그렇지 않다	120	23.5
그렇지 않다	158	31.0
보통	135	26.5
그렇다	72	14.1
매우 그렇다	25	4.9
합계	510	100.0

### ③ 성 담론의 표현

성담론 표현에 대하여 ‘여성은 자유롭게 할 수 있다’에 대하여 보통이라고 응답한 응답자는 197명(38.6%), 그렇지 않다는 응답은 188명(36.9%), 그렇다는 응답은 125명(24.5%)으로 나타났다. 응답을 통해 여성은 여전히 성담론 표현을 자유롭게 하는데 제약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남성의 경우 ‘거침없이 할 수 있다’에 대하여 보통이라는 응답이 212명(41.6%), 그렇다는 응답은 157명(30.8%), 그렇지 않다는 응답은 141명(27.6%)으로 나타나 에 따라 비교적 남성이 성담론을 공식적으로 이야기 하는 통념은 여전히 남아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표25> 성 담론 표현의 자유

구분	여성의 성담론 제기의 자유		당연한 남성의 성담론 표현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전혀 그렇지 않다	60	11.8	45	8.8
그렇지 않다	128	25.1	96	18.8
보통	197	38.6	212	41.6
그렇다	106	20.8	131	25.7
매우 그렇다	19	3.7	26	5.1
합계	510	100.0	51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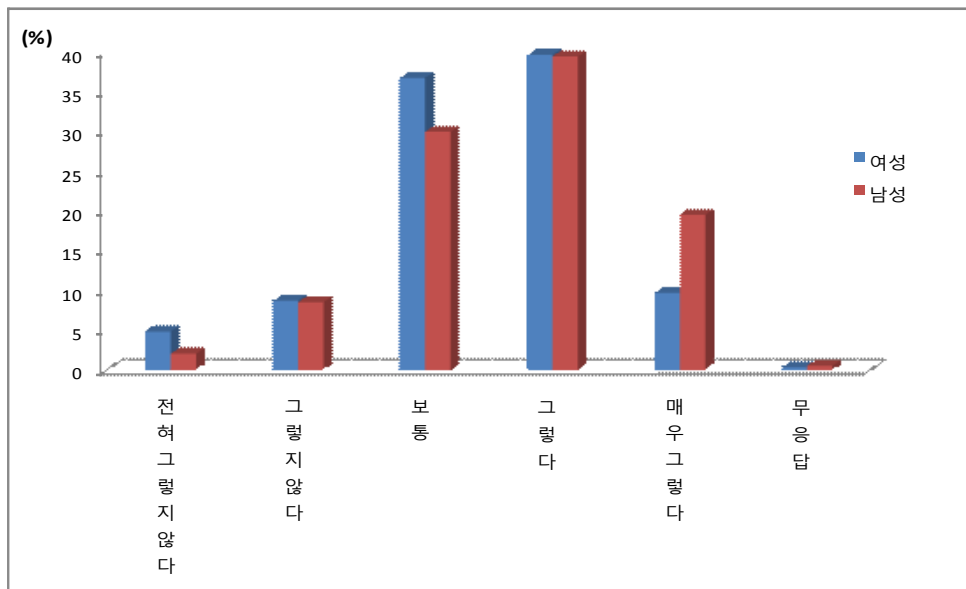
④ 남성 성욕구

남성의 성욕구에 대하여 ‘자연스러운 것이다’에 대하여 그렇다는 응답이 271명 (53.1%), 보통이라는 응답이 174명(34.1%), 그렇지 않다는 응답 63명(12.4%)으로 남성의 성 욕구를 자연스럽다고 인지하고 있는 응답이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표26> 남성 성욕구에 대한 인식

구분	빈도(명)	비율(%)
전혀 그렇지 않다	19	3.7
그렇지 않다	44	8.6
보통	174	34.1
그렇다	202	39.6
매우 그렇다	69	13.5
무응답	2	0.4
합계	510	100.0

<그림2> 남성의 성욕구에 대한 인식(성별)



그런데 이를 다시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의 성 욕구를 자연스럽다고 인식하는 비율은 남성에 비하여 여성이 높게 나타남에 따라 성교육에 있어 남성의 성욕구에 대한 본능이라는 고정관념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 ⑤ 성 관계에 대한 인식

#### a. 성 관계 주도권

성관계에 있어 남자가 주도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질문에 대하여 보통이라고 응답한 응답자는 195명(38.2%)으로 나타났으며, 그렇지 않다는 응답은 159명(31.2%), 그렇다는 응답은 156명(30.6%)으로 긍정과 부정의 의견이 근소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27> 성 관계와 남성의 상관 여부

구분	빈도(명)	비율(%)
전혀 그렇지 않다	50	9.8
그렇지 않다	109	21.4
보통	195	38.2
그렇다	120	23.5
매우 그렇다	36	7.1
무응답	510	100.0
합계	510	100.0

반면 여자가 성관계를 주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문항에 대하여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전체 응답자의 60.8%인 310명으로 나타났으며, 보통이라는 응답이 153명(30.0%), 그렇다는 응답이 47명(9.2%)으로 나타남에 따라 여성이 관계를 주도하는 것에 대하여 거부감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28> 성 관계와 여성의 상관 여부

구분	빈도(명)	비율(%)
전혀 그렇지 않다	121	23.7
그렇지 않다	189	37.1
보통	153	30.0
그렇다	37	7.3
매우 그렇다	10	2.0
합계	510	100

b. 혼전 성관계에 대한 가치관

결혼을 전제로 하지 않아도 성관계를 할 수 있다는 문항에 대하여 그렇다는 응답은 198명(38.8%), 보통이다 164명(32.2%), 그렇지 않다 148명(29.0%)으로 응답을 하였으며, 혼전 성관계가 가능하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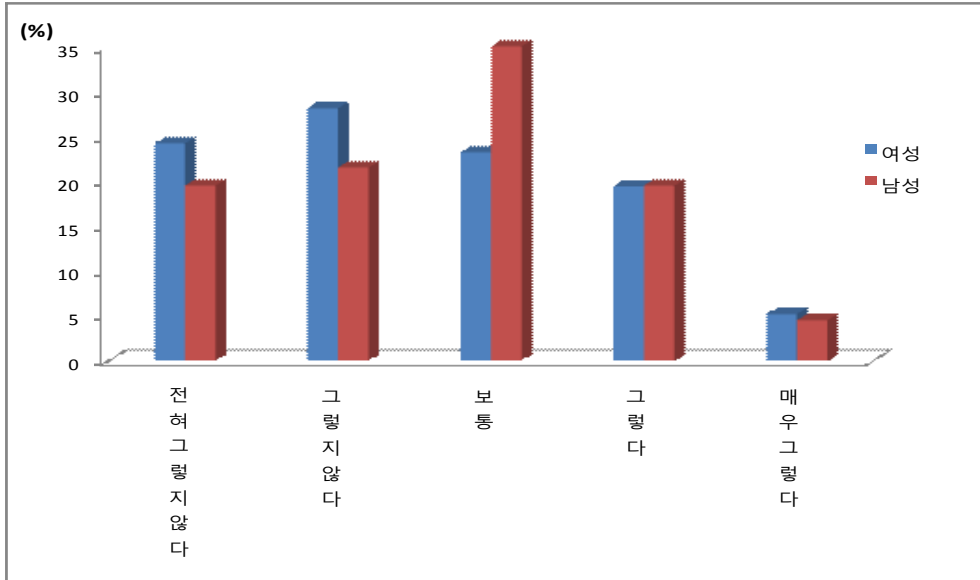
<표29> 혼전 성관계에 대한 의식(1)

구분	빈도(명)	비율(%)
전혀 그렇지 않다	48	9.4
그렇지 않다	100	19.6
보통	164	32.2
그렇다	156	30.6
매우 그렇다	42	8.2
합계	510	100.0

이를 성별로 다시 살펴보면 혼전 성관계에 대하여 그렇지 않다는 응답자의 비율이 남성에 비하여 여성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여전히 ‘순결이데올로기’의 가치관이 여성에게 엄격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림3> 성별에 따른 혼전 성관계에 대한 인식



혼전 성관계에 대하여 “해서는 안된다”는 문항에 대하여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259명(50.8%), 보통이다 134명(26.3%), 그렇다는 응답이 115명(22.5%)으로 나타남에 따라 앞서 결혼을 전제로 성관계에 대한 허용의 가치관이 혼전 성관계 여부에 대한 가치관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혼전 성관계에 대하여 비교적 허용적인 가치관을 나타내고 있다.

<표30> 혼전 성관계에 대한 의식(2)

구분	빈도(명)	비율(%)
전혀 그렇지 않다	74	14.5
그렇지 않다	185	36.3
보통	134	26.3
그렇다	78	15.3
매우 그렇다	37	7.3
무응답	2	0.4
합계	51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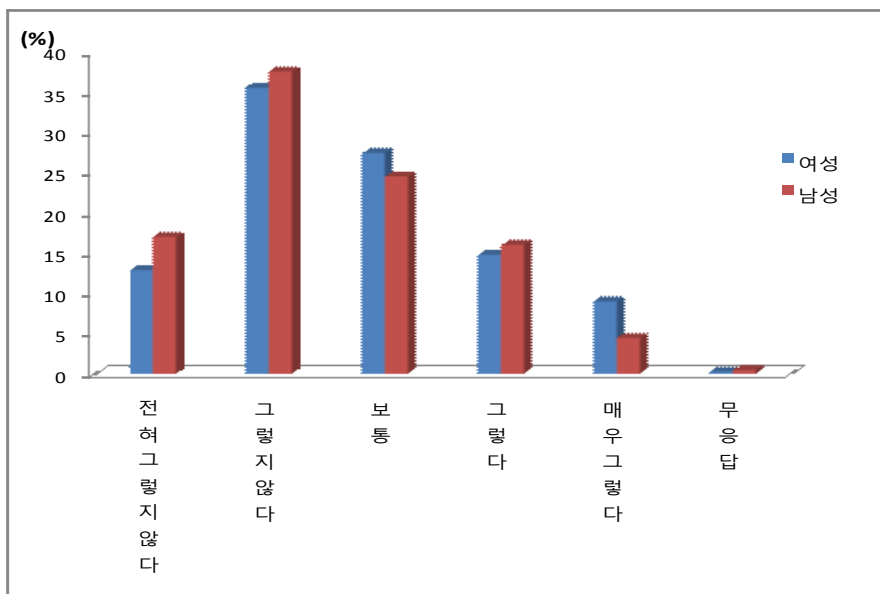
c. 혼전임신에 대한 가치관

혼전임신에 대하여 ‘자연스러운 사회현상이다’는 문항에 대해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전체 응답자의 47.8%(244명)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보통이라는 142명(27.8%), 그렇다는 124명(24.3%)으로 사회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혼전임신을 긍정적으로 보기보다 올바르게 아니라고 보는 가치관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표31> 혼전 임신에 대한 의식

구분	빈도(명)	비율(%)
전혀 그렇지 않다	114	22.4
그렇지 않다	130	25.5
보통	142	27.8
그렇다	99	19.4
매우 그렇다	25	4.9
합계	510	100.0

<그림4> 성별에 따른 혼전 임신에 대한 견해



그러나 성별에 따라 긍정적인 인식을 다시 살펴보면 혼전임신에 대하여 여성이 남성에 비하여 3.3%가 더 높게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반면 남성의 경우 부정적인 인식이 여성에 비하여 6.1%나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혼전 임신에 대하여 남성이 여성에 비하여 부정적인 인식이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

#### d. 동거에 대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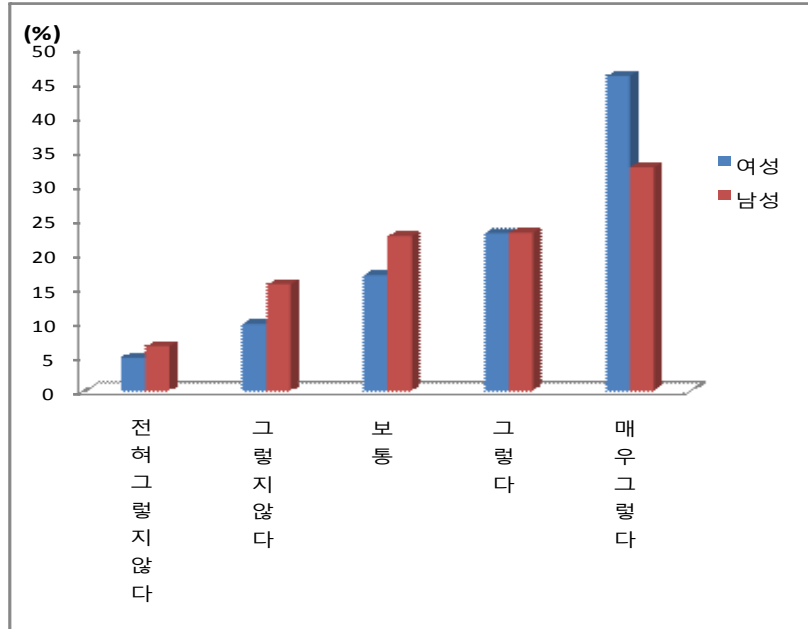
동거는 사회적으로 문제되지 않는다는 문항에 대하여 보통이다 203명(39.8%), 그렇지 않다 171명(33.5%), 그렇다 136명(26.7%)으로 나타났다. 동거에 대하여 부정적인 인식과 긍정적인 인식이 근소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으나 여전히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표32> 동거에 대한 인식

구분	빈도(명)	비율(%)
전혀 그렇지 않다	40	7.8
그렇지 않다	131	25.7
보통	203	39.8
그렇다	97	19.0
매우 그렇다	39	7.6
합계	510	100.0

그러나 동거에 대한 견해를 성별로 살펴보면 여성의 경우 남성에 비하여 동거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가 높은 반면 남성의 경우 상대적으로 동거에 대한 부정적인 가치관이 낮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앞서 순결에 대하여 여전히 여성에게 더 많은 이데올로기가 작동하고 있으며, 전반적인 인식이 동거에 대하여 남성에 비하여 여성에게 부정적인 인식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그림5> 성별에 따른 동거에 대한 견해



⑥ 청소년의 성

최근 청소년에게 까지 성폭력, 성매매 등 성과 관련된 사회적인 영향이 미치고 있으므로 청소년의 성관계에 대한 인식에 있어 “청소년의 성관계는 허용할 수 없다”에 대하여 그렇다는 응답이 324명(63.5%), 보통이다 97명(19.0%), 그렇지 않다 89명(17.5%)으로 청소년의 성관계는 허용하지 않는 의견이 높게 나타났다.

<표33> 청소년의 성관계

구분	빈도(명)	비율(%)
전혀 그렇지 않다	28	5.5
그렇지 않다	61	12.0
보통	97	19.0
그렇다	117	22.9
매우 그렇다	207	40.6
합계	510	100.0

⑦ 부부관계

a. 남편의 권위

‘가정 내 남편의 권위는 존중되어야 한다’에 대하여 그렇다는 응답이 328명 (64.3%), 보통 141명(27.6%), 그렇지 않다 40명(7.8%)으로 나타남에 따라 남편의 권위를 존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표34> 남편의 권위 존중 여부

구분	빈도(명)	비율(%)
전혀 그렇지 않다	16	3.1
그렇지 않다	24	4.7
보통	141	27.6
그렇다	221	43.3
매우 그렇다	107	21.0
무응답	1	0.2
합계	510	100.0

이를 성별로 다시 살펴보면 남성에 비하여 여성이 배우자에 대한 권위를 비교적 존중하여야 한다고 응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35> 성별에 따른 남편의 권위 존중 여부

구분	여성(%)	남성(%)
전혀 그렇지 않다	0.95	
그렇지 않다	0.95	4
보통	17.4	22.5
그렇다	37.1	34.5
매우 그렇다	42.3	38.5
무응답	1.3	0.5
합계	잘못된 계산식	잘못된 계산식

b. 부부의사 결정

가정 내 부부 의사 결정에 있어 동등한 결정권인가에 대하여 그렇다는 응답이 76.9%(392명)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보통이다 99명(19.4%), 그렇지 않다 14명(2.7%)으로 비교적 가정 내 의사결정에 있어 동등한 의사결정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36> 가정 내 동등한 의사결정 여부

구분	빈도(명)	비율(%)
전혀 그렇지 않다	3	0.6
그렇지 않다	11	2.2
보통	99	19.4
그렇다	184	36.1
매우 그렇다	208	40.8
무응답	5	1.0
합계	510	100.0

⑧ 음주와 폭력

여성에게 폭력이 일어나는 경우 음주가 원인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에 대한 가치관에 있어 ‘술을 마시고 일어나는 폭력은 어쩔 수 없다’는 문항에 대하여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85.9%(438명)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반면 일어날 수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8.0%(41명), 보통 31명(6.1%)으로 나타남에 따라 음주로 인한 폭력에 대하여 부정적인 견해가 매우 높게 나타났다.

<표37> 음주와 폭력 가능 여부

구분	빈도(명)	비율(%)
전혀 그렇지 않다	355	69.6
그렇지 않다	83	16.3
보통	31	6.1
그렇다	32	6.3
매우 그렇다	9	1.8
합계	51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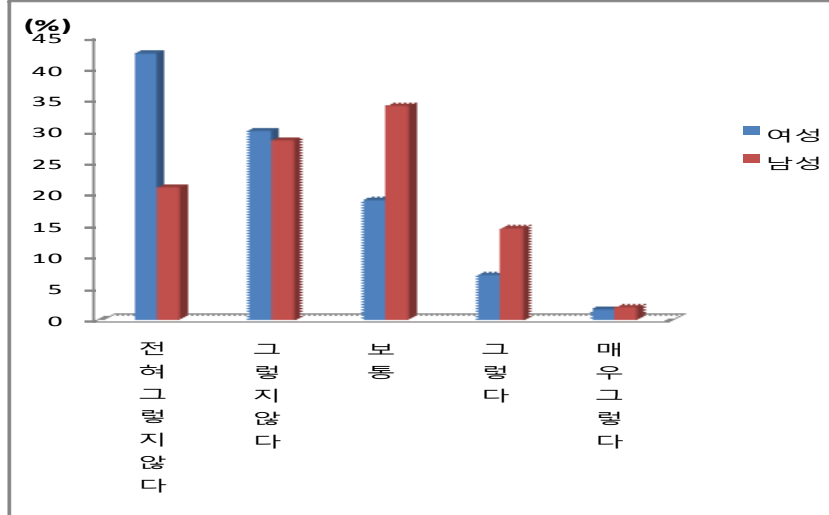
반면 술자리에서의 종종 발생하고 있는 성희롱을 어떻게 인지하고 있는가에 대하여 ‘술자리에서 야한 농담은 분위기를 위해 필요하다’는 문항에 대하여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63.3%(323명)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보통 127명(24.9%), 그렇다 60명(11.8%) 순으로 나타났다.

<표38> 회식과 야한 농담 가능 여부

구분	빈도(명)	비율(%)
전혀 그렇지 않다	173	33.9
그렇지 않다	150	29.4
보통	127	24.9
그렇다	51	10.0
매우 그렇다	9	1.8
합계	510	100.0

이를 성별로 다시 살펴보면 여성의 경우 남성에 비하여 술자리에서의 야한 농담에 대하여 적절하지 않다는 응답의 비율이 72.3%인데 반해 남성은 49.5%로 여성이 남성에 비하여 22.8%로 높게 나타났다. 남성은 여성에 비하여 술자리에서 언어폭력에 대하여 비교적 관대한 편으로 나타났다.

<그림6> 회식 자리에서 야한 농담에 대한 생각



⑨ 돌봄

가족 내 돌봄에 대한 공동부담 여부에 대하여 ‘자녀를 돌보는 일은 엄마/아내의 책임이다’는 문항에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327명(64.1%), 보통이다 123명(24.1%), 그렇다 60명(11.8%)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여성과 남성이 자녀를 돌보는데 있어 공동책임이라는 인식이 64%로 높게 나타났으며, 남성에 비하여 여성이 0.2% 정도 책임을 더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39> 자녀 돌봄은 엄마/아내의 책임 여부

구분	빈도(명)	비율(%)
전혀 그렇지 않다	190	37.3
그렇지 않다	137	26.9
보통	123	24.1
그렇다	46	9.0
매우 그렇다	14	2.7
합계	510	100.0



### 3) 폭력에 대한 인식

#### (1) 폭력 피해 가능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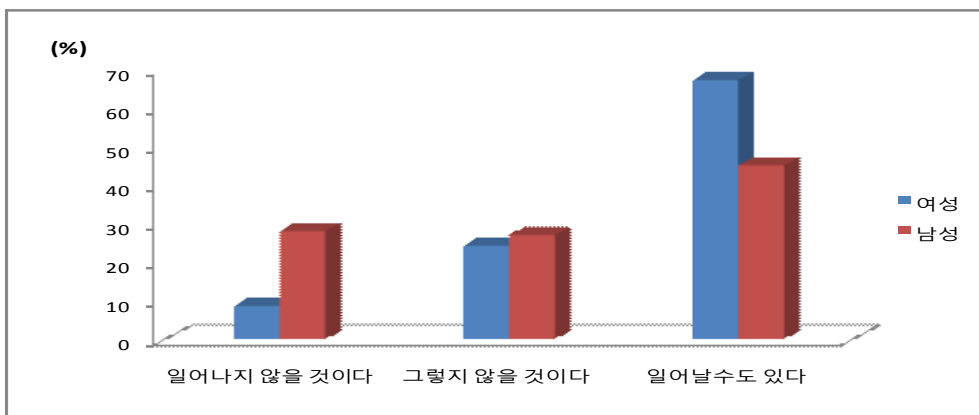
##### a. 당사자 여부

‘나에게도 성폭력이 일어날 수 있다’에 대하여 그렇다는 응답자가 58.4%, 그럴 수도 있다 25.3%,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16.3%로 나타남에 따라 내가 성폭력 당사자가 될 수도 있다는 인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상에서의 여성의 안전이 보호되지 않는 것으로 2명 가운데 1명은 성폭력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다.

<표40> 성폭력의 발생 여부

구분	빈도(명)	비율(%)
전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33	6.5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50	9.8
그럴 수도 있다	129	25.3
발생할 수 있다	204	40.0
발생할 것이다	94	18.4
합계	510	100.0

<그림7> 성폭력 피해 당사자가 될 가능성(성별)



특히 여성의 경우 남성에 비하여 성폭력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응답자의 비율이 여성의 경우 3명 가운데 2명이 피해자가 될 수 있다고 응답한 반면 남성의 경우 1.5명만이 피해자가 될 수 있다고 응답을 하였다.

b. 성폭력 피해가족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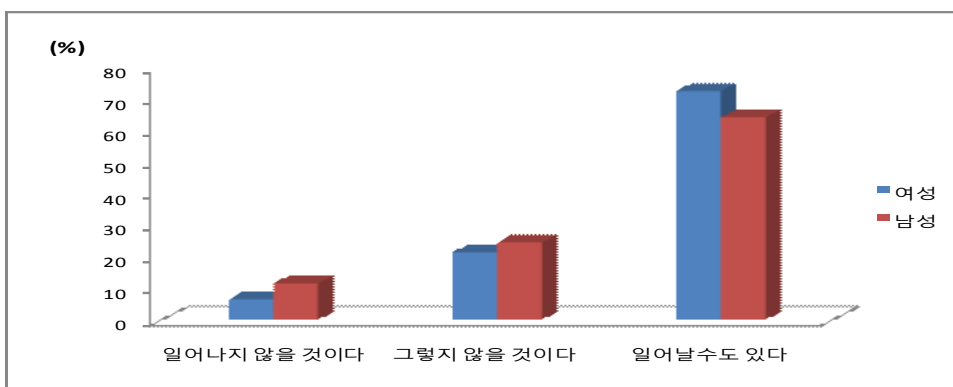
‘나의 가족도 성폭력 피해자가 될 수 있다’에 대하여 그렇다는 응답자가 69%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그럴 수 있다는 응답이 22.5%, 그렇지 않다 8.4%로 나타남에 따라 가족에게 발생할 수 있는 비율은 더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표41> 성폭력이 가족에게 발생할 가능성

구분	빈도(명)	비율(%)
전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16	3.1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27	5.3
그럴 수도 있다	115	22.5
발생할 수 있다	230	45.1
발생할 것이다	122	23.9
합계	510	100.0

성폭력 피해가족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하여 여성 72.3%, 남성은 64%로 나타났다.

<그림7> 성폭력이 가족에게 발생할 가능성(성별)



c. 데이트 성폭력

최근 데이트 성폭력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애인사이에서는 성폭력이 발생 하지 않는다’라는 문항에 대하여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54.5%(278명)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그렇지 않을 것이다 137명(26.9%), 그럴 것이다 94명(18.4%)으로 응답을 하였다.

데이트 성폭력에 대하여 응답자의 2명 가운데 1명은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있지만, 5명 가운데 1명은 데이트 성폭력을 인지하지 못하는 상반된 결과를 완화시키기 위해서 데이트를 하는 연인 관계나 부부관계에 있어 상대방의 의사 존중에 대한 교육이 꾸준히 제공될 필요가 있다.

<표42> 데이트 성폭력의 발생 가능성

구분	빈도(명)	비율(%)
전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109	21.4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169	33.1
그럴 수도 있다	137	26.9
발생할 수 있다	67	13.1
발생할 것이다	27	5.3
무응답	1	0.2
합계	510	100

d. 잠재적인 피해자

‘누구나 성폭력 피해자가 될 수 있다’에 대하여 그렇다는 응답이 429명(84.1%)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보통 59명(11.6%), 그렇지 않다 21명(4.1%)순으로 나타났으며, 누구나 성폭력의 잠재적인 피해자가 될 수 있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43> 성폭력 피해자 가능성

구분	빈도(명)	비율(%)
전혀 그렇지 않다	10	2.0
그렇지 않다	11	2.2
보통	59	11.6
그렇다	222	43.5
매우 그렇다	207	40.6
무응답	1	0.2
합계	510	100.1

(2) 여성에 대한 폭력

① 성폭력

a. 피해자 유발론

성폭력 피해자에 대하여 잘못된 통념으로 알려진 '당사자 유발론'에 대하여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전체 응답의 53.5%(273명)로 높게 나타났으며, 보통 137명(26.9%), 그렇다는 응답이 19.2%(98명)로 나타났다.

<표44> 성폭력 피해자 유발론

구분	빈도(명)	비율(%)
전혀 그렇지 않다	114	22.4
그렇지 않다	159	31.2
보통	137	26.9
그렇다	82	16.1
매우 그렇다	16	3.1
무응답	2	0.4
합계	510	100.0

b. 피해자 - 특정 연령 및 여성에게 집중

또한 성폭력 피해자의 연령이나 성별에 대하여 ‘성폭력의 피해자는 주로 어리거나 젊은 여자가 많다’는 통념에 동의한 응답이 293명(57.5%), 보통 128명(25.1%), 그렇지 않다 88명(17.3%) 순으로 나타났다.

<표45> 성폭력 피해자 - 여아 또는 여성의 높은 비율

구분	빈도(명)	비율(%)
전혀 그렇지 않다	27	5.3
그렇지 않다	61	12.0
보통	128	25.1
그렇다	218	42.7
매우 그렇다	75	14.7
무응답	1	0.2
합계	510	100.0

c. 피해사실 은폐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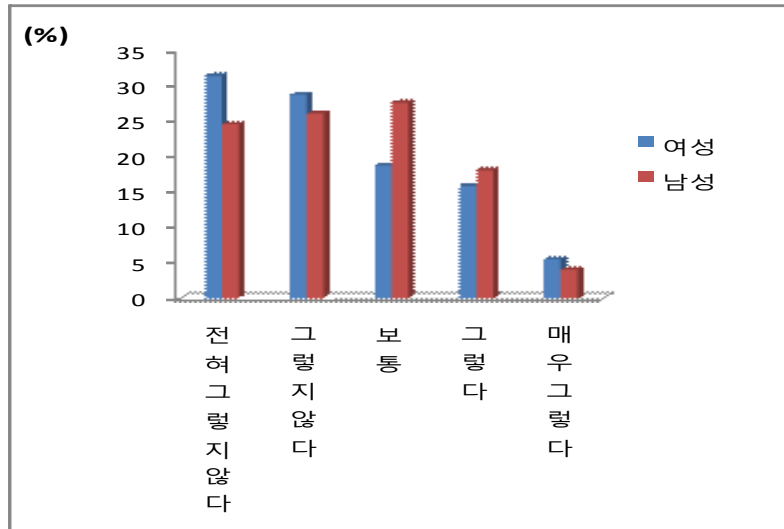
과거 피해자 은폐에 대하여 ‘성폭력 피해자는 신고하면 손해이다’는 문항에 대하여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응답자는 287명(56.3%)이며, 보통 113명(22.2%), 그렇다 110명(21.6%) 순으로 나타났다.

<표46> 성폭력 피해자 신고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

구분	빈도(명)	비율(%)
전혀 그렇지 않다	146	28.6
그렇지 않다	141	27.6
보통	113	22.2
그렇다	85	16.7
매우 그렇다	25	4.9
합계	510	100.0

성폭력피해자가 여전히 피해를 은폐해야한다는 입장은 5명 가운데 1명으로 생존자로서 일상에 복귀할 수 있는 교육 및 지지 프로그램이 포괄적으로 제공될 필요가 있다.

<그림9> 성폭력 피해자의 신고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성별)



또한 ‘성폭력 피해자는 제대로 일상생활을 할 수 없다’는 문항에 대하여 그렇다는 응답이 66.3%(338명)로 가장 많은 응답을 하였으며, 보통 101명(19.8%), 그렇지 않다 71명(13.9%) 순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성폭력 피해자는 일상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가치관이 매우 높게 인식되어 있으므로 이를 위하여 성폭력 생존자의 일상생활을 지지하기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과 지원이 필요하다.

<표47> 성폭력 피해자의 일상생활 부적응 여부

구분	빈도(명)	비율(%)
전혀 그렇지 않다	20	3.9
그렇지 않다	51	10.0
보통	101	19.8
그렇다	218	42.7
매우 그렇다	120	23.6
합계	510	100

d. 특정시간 성폭력 발생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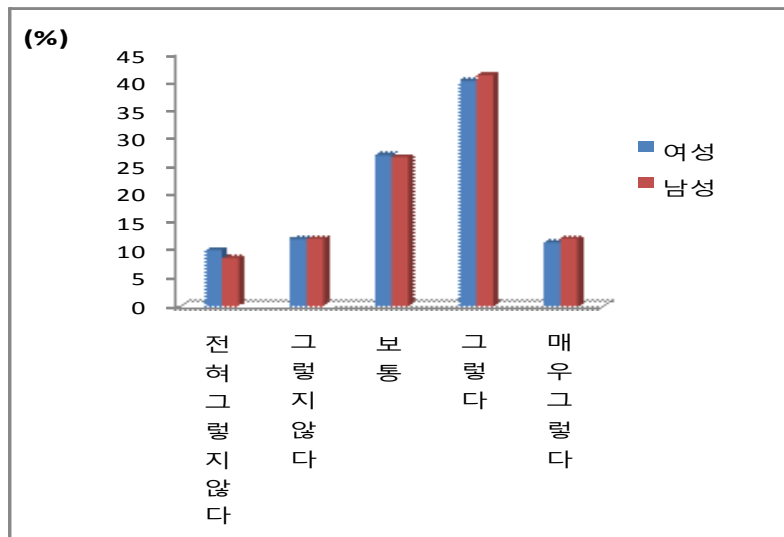
성폭력이 주로 발생하는 시간을 ‘야간’으로 인지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그렇다는 응답이 전체 응답자의 52.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보통 26.7%, 그렇지 않다 21.4%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성별로 살펴볼 경우 여성과 남성에 있어 모두 유사하게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야간활동의 두려움은 성별과 무관한 것을 알 수 있다.

<표48> 야간 성폭력 발생 여부

구분	빈도(명)	비율(%)
전혀 그렇지 않다	48	9.4
그렇지 않다	61	12.0
보통	136	26.7
그렇다	206	40.4
매우 그렇다	59	11.6
합계	510	100.0

<그림10> 야간 성폭력 발생에 대한 생각(성별)



e. 성폭력은 아는 사람으로부터 발생 가능성이 높다

‘성폭력은 아는 사람으로부터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에 대하여 그렇다는 응답이 59.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보통 26.3%, 그렇지 않다 14.5% 순으로 나타났다.

<표49> 아는 사람으로부터 성폭력 피해 가능성

구분	빈도(명)	비율(%)
전혀 그렇지 않다	12	2.4
그렇지 않다	62	12.2
보통	134	26.3
그렇다	190	37.3
매우 그렇다	112	22.0
합계	510	100.0

f. 성폭력 예방교육

성폭력 예방교육에 대하여 ‘별로 효과가 없다’에 대하여 그렇지 않다는 응답자는 205명(40.2%)으로 나타났으며, 보통 180명(35.3%), 그렇다 125명(24.5%) 순으로 으로 성폭력 예방교육의 효과가 있다는 견해가 비교적 높게 나타나고 있다.

<표50> 성폭력 예방교육의 비효과 여부

구분	빈도(명)	비율(%)
전혀 그렇지 않다	75	14.7
그렇지 않다	130	25.5
보통	180	35.3
그렇다	101	19.8
매우 그렇다	24	4.7
합계	510	100.0



② 가정폭력

a. 신고 필요성

‘가정폭력은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에 대하여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전체 응답자의 82%(418명)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51> 가정폭력의 신고 필요성

구분	빈도(명)	비율(%)
반드시 해야 한다	272	53.3
해야 한다	146	28.6
보통	39	7.6
하지 않아도 된다	31	6.1
할 필요가 없다	20	3.9
합계	2	0.4

b. 가정폭력에 대한 통념

‘가정폭력은 술과 관련이 깊다’에 대하여 그렇다는 응답이 63.3%, 보통 23.7%, 그렇지 않다 12.7% 로 술과 관련성이 높다고 응답하였다.

<표52> 가정폭력과 음주 관련성

구분	빈도(명)	비율(%)
전혀 그렇지 않다	22	4.3
그렇지 않다	43	8.4
보통	121	23.7
그렇다	217	42.5
매우 그렇다	106	20.8
무응답	1	0.2
합계	510	100.0

다음으로 ‘부부싸움은 칼로 물 베기이다’에 대하여 보통이라는 응답이 43.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렇지 않다 35.5%, 그렇다 20.4% 순으로 나타났다.

<표53> 가정폭력의 일상화에 대한 견해

구분	빈도(명)	비율(%)
전혀 그렇지 않다	70	13.7
그렇지 않다	111	21.8
보통	223	43.7
그렇다	82	16.1
매우 그렇다	22	4.3
무응답	2	0.4
합계	510	100.0

c. 가정폭력의 유형

대상자별 아내, 남편, 노인 및 아동 등 학대 및 폭력에 대하여 가정폭력으로 인식하고 있는 비율이 44.2%로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매우 그렇다는 응답이 응답자 평균 53.2%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표54> 대상자별 가정폭력 인지 여부

구분	아내학대와 폭력(%)	남편학대(%)	노인 및 아동 학대(%)
전혀 그렇지 않다	1.2	1.0	1.0
그렇지 않다	0.8	1.8	2.4
보통	9.6	9.6	7.5
그렇다	35.1	36.3	34.1
매우 그렇다	53.3	51.4	54.9
무응답	-	-	0.2
합계	100.0	100.0	100.0

d. 가정폭력 전이

‘가정폭력은 자녀에게도 세습된다’에 대하여 그렇다는 응답이 401명(78.6%), 보통 63명(12.4%), 그렇지 않다 46명(9.1%)으로 나타났다.

<표55> 가정폭력의 세대 전이 여부

구분	빈도(명)	비율(%)
전혀 그렇지 않다	10	2.0
그렇지 않다	36	7.1
보통	63	12.4
그렇다	176	34.5
매우 그렇다	225	44.1
합계	510	100

e. 가정폭력 예방교육 효과

‘가정폭력 예방교육 효과 있다’에 대하여 응답자의 214명(41.9%)이 효과가 있다고 응답하였으나, 보통 162명(31.8%), 그렇지 않다 134명(26.3%)로 나타남에 따라 예방교육이 일정 부분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56> 가정폭력 예방교육의 효과

구분	빈도(명)	비율(%)
매우 효과가 있다	97	19.0
효과가 있다	117	22.9
보통	162	31.8
효과가 없다	96	18.8
전혀 효과가 없다	38	7.5
합계	510	100

또한 ‘매년 가정폭력이 증가하고 있다’에 대하여 그렇다는 응답이 58.8%(300명)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보통 181명(35.5%), 그렇지 않다 28명(5.5%) 순으로 나타남에 따라 가정폭력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57> 가정폭력 증가 여부

구분	빈도(명)	비율(%)
전혀 그렇지 않다	5	1.0
그렇지 않다	23	4.5
보통	181	35.5
그렇다	227	44.5
매우 그렇다	73	14.3
무응답	1	0.2
합계	510	100.0

### ③ 성희롱

‘성희롱은 의도적이지 않고 친밀함의 표시이다’에 대하여 그렇지 않다는 응답자가 79.6%로 높게 나타났으며, 보통 13.5%, 그렇다 6.7% 순으로 나타났다.

<표58> 성희롱과 친밀함 표현 여부

구분	빈도(명)	비율(%)
전혀 그렇지 않다	240	47.1
그렇지 않다	166	32.5
보통	69	13.5
그렇다	25	4.9
매우 그렇다	9	1.8
무응답	1	0.2
합계	510	100.0

또한 상대를 배려하지 않은 일방적인‘성적인 농담이나 스킨십은 상대방이 거부해도 괜찮다’는 생각에 대하여 그렇지 않다는 응답자가 54.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성희롱에 있어 통념적으로 거부를 긍정의 시각으로 인식했던 견해가 많이 개선된 것을 알 수 있다.

<표59> 성적인 농담과 스킨십 여부

구분	빈도(명)	비율(%)
전혀 그렇지 않다	175	34.3
그렇지 않다	103	20.2
보통	78	15.3
그렇다	75	14.7
매우 그렇다	79	15.5
합계	510	100.0

④ 성매매

'성매매는 여성폭력이다'에 대하여 그렇다는 응답자가 67.6%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성매매를 여성에 대한 폭력으로 인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60> 성매매는 여성에게 가해지는 폭력이라는 견해

구분	빈도(명)	비율(%)
전혀 그렇지 않다	17	3.3
그렇지 않다	37	7.3
보통	111	21.8
그렇다	168	32.9
매우 그렇다	177	34.7
합계	510	100.0

⑤ 폭력과 일상생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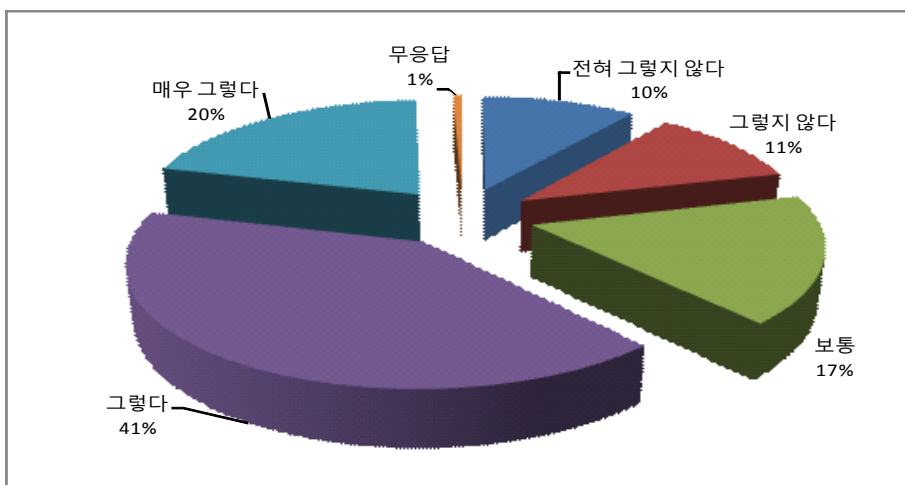
a. 애정과 폭력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폭력 피해를 당할 수 있다’에 대하여 그렇다는 응답자는 61.2%, 그렇지 않다 21.0%, 보통 17.3%로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폭력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61> 애정관계에서의 폭력 가능성

구분	빈도(명)	비율(%)
전혀 그렇지 않다	53	10.4
그렇지 않다	54	10.6
보통	88	17.3
그렇다	208	40.8
매우 그렇다	104	20.4
무응답	3	0.6
합계	510	100.0

<그림11> 애정과 폭력의 가능성



b. 야간 안전

‘밤길은 여성, 아동·청소년에게는 안전하지 않다’에 대하여 그렇다는 응답자가 84.3%로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5명 가운데 4명이 야간 보행의 위험을 인지하는 것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표62> 야간 안전 여부

구분	빈도(명)	비율(%)
전혀 그렇지 않다	6	1.2
그렇지 않다	5	1.0
보통	69	13.5
그렇다	210	41.2
매우 그렇다	220	43.1
합계	510	100.0

성별로 보면 여성의 경우 전체 응답자의 89.7%가 야간 보행에 대한 위협을 느끼고 있는 반면 남성의 경우 76%가 야간보행에 위협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남성과 여성 모두 야간 보행에 대한 위협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c. 폭력 예방 교육 필요성

여성에 대한 폭력을 예방하기 위하여 ‘폭력예방이 꼭 필요하다’에 대하여 그렇다는 응답이 91.4%로 높게 나타났다.

<표63> 폭력 예방의 필요성

구분	빈도(명)	비율(%)
전혀 그렇지 않다	5	1.0
그렇지 않다	8	1.6
보통	31	6.1
그렇다	190	37.3
매우 그렇다	276	54.1
합계	510	100.0

폭력 예방의 필요성에 대하여 남성에 비하여 여성이 6.4%가 높은 93.9%로 나타남에 따라 여성이 폭력에 대한 예방의 필요성을 더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64> 폭력 예방의 필요성(성별)

구분	여성(%)	남성(%)
전혀 그렇지 않다	0.7	2.0
그렇지 않다	0.9	1.0
보통	8.7	21.0
그렇다	39.4	44.0
매우 그렇다	50.3	32.0
합계	100	100

d. 폭력의 유형

폭력의 유형으로 스토킹에 ‘스토킹도 폭력이다’에 대하여 그렇다는 응답자가 87.6%로 높게 나타났다.



<표65> 폭력으로써 인지되는 스토킹

구분	빈도(명)	비율(%)
전혀 그렇지 않다	3	0.6
그렇지 않다	6	1.2
보통	54	10.6
그렇다	197	38.6
매우 그렇다	250	49.0
합계	510	100.0

언어적인 폭력의 범주에 드는 것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모욕 22.2%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욕설 19.7%, 위협하기 14.7%, 두렵게 하기 14.1%, 공격적인 언어로 소리치기 10.4%, 욱박지르기 7.8%, 중상모략(비방) 6.9%, 고함지르기 3.5%, 기타 0.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66> 성과 관련된 언어폭력의 유형

구분	빈도(명)	비율(%)
모욕	319	22.2
중상모략(비방)	100	6.9
욕설	284	19.7
위협하기	211	14.7
고함지르기	50	3.5
두렵게 하기	203	14.1
공격적인 언어로소리치기	149	10.4
욱박지르기	112	7.8
기타	11	0.8
합계	1439	100.0

또한 신체 폭력의 범주로 보는 것에 대하여 때리기 13.9%, 거칠게 잡기 9.4%, 제압하기 9.1%, 머리잡아당기기 8.8%, 무기사용 8.5%, 목조르기 8.3%, 주먹치기 6.8%, 깨물기 5.6%, 물건던지기 5.5%, 꼬집기 5.5%, 손바닥으로 때리기 4.9%, 팔 비틀기

4.7%, 밀기/떠다밀기 3.5%, 주변물건파손 3.0%, 방해하기 1.8%, 기타 0.8% 등의 순으로 응답을 하였다.

<표67> 신체폭력의 유형

구분	빈도(명)	비율(%)
때리기	287	13.9
주먹치기	140	6.8
꼬집기	113	5.5
밀기/떠다밀기	73	3.5
거칠게 잡기	194	9.4
손바닥으로 때리기	101	4.9
목조르기	171	8.3
깨물기	116	5.6
물건던지기	114	5.5
팔 비틀기	97	4.7
방해하기	38	1.8
주변물건파손	63	3.0
제압하기	188	9.1
머리잡아당기기	181	8.8
무기사용	175	8.5
기타	17	0.8
합계	2068	100.0

#### 4) 폭력과 처벌

##### (1) 폭력과 형량

여성에 대한 폭력의 형량과 관련 ‘현재 성폭행 형량은 낮다’에 대하여 그렇다는 응답이 79.2%로 가장 많이 응답을 하였으며, 다음으로 보통 11.4%, 그렇지 않다

9.0%로 형량이 비교적 낮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표66> 성폭력에 대한 낮은 형량

구분	빈도(명)	비율(%)
전혀 그렇지 않다	21	4.1
그렇지 않다	25	4.9
보통	58	11.4
그렇다	156	30.6
매우 그렇다	248	48.6
무응답	2	0.4
합계	510	100.0

(2) 아동 성폭력 형량 강화

아동성폭력에 대하여 ‘형량이 더 강화되어야 한다’에 대하여 그렇다는 응답이 94.1%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표69> 아동성폭력 형량 강화 필요성

구분	빈도(명)	비율(%)
전혀 그렇지 않다	1	0.2
그렇지 않다	6	1.2
보통	21	4.1
그렇다	124	24.3
매우 그렇다	356	69.8
무응답	2	0.4
합계	510	100.0

(3)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와 위치추적 장치

‘성범죄자의 신상정보공개는 꼭 필요하다’에 대하여 그렇다는 응답이 89.2%로 나타났으며, ‘위치추적 전자장치 확대 강화’에 대하여 그렇다는 응답이 94.5%로 역시 높게 나타났다.

<표70>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와 위치추적 장치 강화

구분	신상정보 공개		위치추적장치 강화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전혀 필요하지 않다	3	0.6	4	0.8
필요하지 않다	9	1.8	7	1.4
그저 그렇다	41	8.0	15	2.9
필요하다	119	23.3	118	23.1
매우 필요하다	336	65.9	364	71.4
무응답	2	0.4	2	0.4
합계	510	100.0	510	100.0

(4) 거주제한제도 도입 여부

‘성관련 범죄자의 거주제한 제도 도입 필요’에 대하여 그렇다는 응답이 90.0%로 매우 높게 나타남에 따라 향후 제주 지역에서 거주제한 제도 도입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71> 성범죄자의 거주제한 제도 도입 여부

구분	빈도(명)	비율(%)
전혀 그렇지 않다	2	0.4
그렇지 않다	12	2.4
보통	35	6.9
그렇다	118	23.1
매우 그렇다	341	66.9
무응답	2	0.4
합계	510	100.0

(5) 폭력예방교육 의무 필요성과 처벌 강화

폭력예방교육을 ‘제도적으로 의무화하여야 한다’에 대하여 그렇다는 응답이 전체 응답의 93.9%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또한 성희롱 근절을 위하여 ‘예방교육보다 처벌 강화’에 그렇다고 응답한 응답자가 84.7%로 현재 성희롱 처벌 수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표72> 폭력 예방교육 의무 필요성과 처벌 강화

구분	폭력 예방 교육 의무화		성희롱 예방교육 < 처벌강화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전혀 필요하지 않다			9	1.8
필요하지 않다	10	2.0	17	3.3
그저 그렇다(보통)	19	3.7	50	9.8
필요하다	115	22.5	120	23.5
매우 필요하다	364	71.4	312	61.2
무응답	2	0.4	2	0.4
합계	510	100.0	510	100.0

5) 폭력 피해자 지원제도

(1) 정보 인지 여부

① 피해자 지원 제도 정보 인지 여부

‘성범죄자 알람e사이트(<http://www.sexoffender.go.kr/>)’ 인지에 대하여 처음 들었다는 응답자가 41.0%로 나타났으며, 전혀 모른다는 응답자가 30.8%, 알고 있다는 응답자가 24.3%, 잘 알고 있다는 응답자가 3.5%로 나타나났다. 이를 통해 성범죄자 관련 정보를 온라인에서 제공하고 있어도 실질적으로 접근하는데 정보를 습득하는데 홍보가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73> 성범죄자 알림e사이트 인지 여부

구분	빈도(명)	비율(%)
잘 알고 있다	18	3.5
알고 있다	124	24.3
처음 들었다	209	41.0
전혀 모른다	157	30.8
무응답	2	0.4
합계	510	100.0

② 피해자 상담 지원 인지 여부

a. 긴급전화 인지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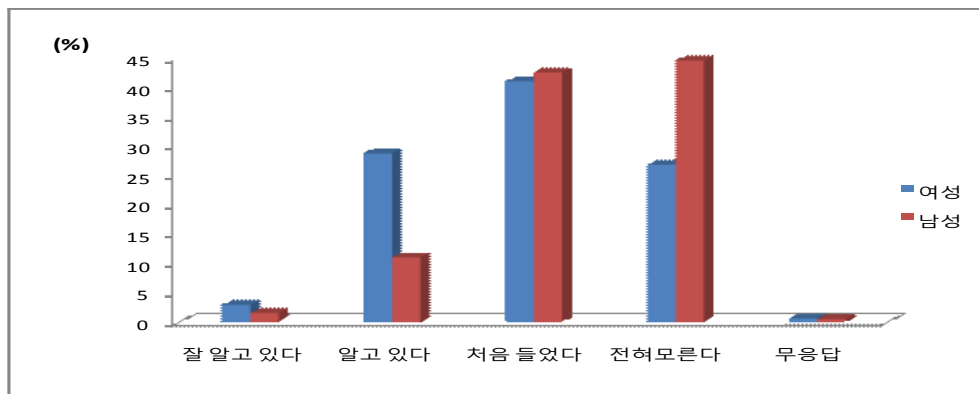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긴급 상담과 보호를 위하여 1년 365일 운영되고 있는 '1366'의 인지 정도에 대하여 처음 들었다고 응답한 응답자는 41.6%, 전혀 모른다는 응답자는 33.7%, 알고 있다는 응답자는 21.8%, 잘 알고 있다 응답자는 2.4%로 나타났다. 제공되는 다양한 서비스에 대하여 알고 있는 정도는 처음 들었다가 48.8%로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전혀 모른다 33.9%, 알고 있다 15.5%, 잘 알고 있다 1.4% 순으로 나타났다.

<표74> 1366의 제공서비스와 인지 정도

구분	1366 인지 정도		1366 제공 서비스 인지 정도		평균(%)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잘 알고 있다	12	2.4	7	1.4	1.9
알고 있다	111	21.8	79	15.5	18.6
처음 들었다	212	41.6	249	48.8	45.2
전혀 모른다	172	33.7	173	33.9	33.8
무응답	3	0.6	2	0.4	0.5
합계	510	100	510	100	100

이를 통해 인지 정도를 살펴보면 1366과 제공되는 서비스를 인지하고 있는 정도는 5명 가운데 1명이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5명 가운데 4명은 피해자를 지원하는 서비스에 대하여 인지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보면 여성응답자에 비하여 남성응답자의 인지 정도가 비교적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림12> 1366 인지 여부(성별)



b. 원스톱지원센터 인지 여부

제주도내 여성·학교폭력지원센터인 원스톱지원센터가 한라병원 내에 위치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 정도는 처음 들었다는 응답자가 전체 응답자의 55.9%로 가장 많았으며, 전혀 모른다 38.8%, 알고 있다 3.9%, 잘 알고 있다 1.0%로 응답자의 94.7%인 대부분이 원스톱지원센터에 대하여 인지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75> 원스톱지원센터 인지 여부

구분	빈도(명)	비율(%)
잘 알고 있다	5	1.0
알고 있다	20	3.9
처음 들었다	285	55.9
전혀 모른다	198	38.8
무응답	2	0.4
합계	510	100.0

c. 폭력예방 및 피해자 지원 긴급 전화 인지 여부

“1366”을 모른다 76.5%, “1577-1366”을 모른다 97.8%, “1389”를 모른다 97.6%, “1391”을 모른다 96.3%, “1388”을 모른다 93.7%, “117”을 모른다 94.5%로 응답함에 따라 긴급 지원 전화에 대하여 응답자 평균 92.7%가 알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76> 폭력예방 및 피해자 지원 긴급전화 인지 여부

구분	1366인지 (%)	1577-1366인지 (%)	1389인지 (%)	1391인지 (%)	1388인지 (%)	117인지 (%)
알고 있다	23.1	1.8	2.0	3.3	5.7	5.1
모르고 있다	76.5	97.8	97.6	96.3	93.7	94.5
무응답	0.4	0.4	0.4	0.4	0.6	0.4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d. 피해자 지원 기관 인지 여부

여성·학교폭력 지원기관인 원스톱지원센터에 대하여 모르고 있다 94.3%, 아동학대예방센터(아동보호전문기관)에 대하여 모르고 있다 81.6%, 아동성폭력센터(해바라기아동센터<sup>15)</sup>)에 대하여 모르고 있다 89.8%, 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한 기관에 대하여 모르고 있다 87.3%, 성폭력 피해자 쉼터에 대하여 모르고 있다 81.4%,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기관에 대하여 모르고 있다 87.8%, 가정폭력 피해자 쉼터에 대하여 모르고 있다 80.0%, 장애인성폭력 상담기관에 대하여 모르고 있다 90.4%, 성매매 피해자 상담소에 대하여 모르고 있다 94.1%, 성매매 피해자 지원 기관에 대하여 모르고 있다 95.3%, 미혼모 지원 시설에 대하여 모르고 있다 84.1%로 나

15) 해바라기아동센터는 서울, 대구경북, 광주전남, 경기, 경남, 부산, 인천, 전북, 강원, 충청 등 10개 권역에 운영 중이다.



타났다. 응답자 전체 평균 88.4%가 여성관련 폭력에 대하여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나 기관에 대하여 인지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77> 폭력 및 피해자 지원 기관 인지 여부(1)

구분	원스톱지원센터인지 (%)	아동보호전문기관 인지 (%)	해바라기아동센터인지 (%)	평균 (%)
알고 있다	5.1	18.0	9.8	11.0
모르고 있다	94.3	81.6	89.8	88.6
무응답	0.6	0.4	0.4	0.4
합계	100.0	100.0	100.0	100

<표78> 폭력 및 피해자 지원 기관 인지 여부(2)

구분	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 (%)	성폭력 피해자 센터 (%)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기관 (%)	가정폭력 피해자 센터 (%)	장애인 성폭력 상담기관 (%)	평균 (%)
알고 있다	12.4	18.2	11.8	19.0	9.2	14.1
모르고 있다	87.3	81.4	87.8	80.6	90.4	85.5
무응답	0.4	0.4	0.4	0.4	0.4	0.4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

<표79> 폭력 및 피해자 지원 기관 인지 여부

구분	성매매 피해자 상담소 (%)	성매매 피해자 지원기관 (%)	미혼모 지원시설 (%)	평균 (%)
알고 있다	5.5	4.3	15.5	8.43
모르고 있다	94.1	95.3	84.1	91.17
무응답	0.4	0.4	0.4	0.40
합계	100.0	100.0	100.0	100

e. 피해자 지원 기관 이용 여부

여성 긴급전화 1366에 대하여 이용해 본 적이 없다 97.3%, 이주여성 긴급전화 1577-1366에 대하여 이용해 본 적이 없다 98.6%, 노인학대 예방센터 1389에 대하여 이용해 본 적이 없다 98.8%, 아동학대 예방센터 1391에 대하여 이용해 본 적이 없다 99.4%, 청소년 유해사범신고전화 1388에 대하여 이용해 본 적이 없다 98.2%, 성매매 신고 전화 117을 이용해 본 적 없다 99.2%로 대부분의 응답자가 지원되는 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결과적으로 앞서 인지 여부와 상관있는 것으로 정보에 대한 부족이 이용과 연계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80> 피해자 지원 전화 상담서비스 이용 여부(1)

구분	1366 이용 여부 (%)	1577-1366 이용 여부 (%)	1389 이용 여부 (%)	평균 (%)
나/주변 이용 경험 있음	2.4	1.0	0.8	1.4
이용해본적없음	97.3	98.6	98.8	98.2
무응답	0.4	0.4	0.4	0.4
합계	100.0	100.0	100.0	100

<표81> 피해자 지원 전화 상담서비스이용 여부(2)

구분	1391이용여부 (%)	1388 이용 여부 (%)	117이용여부 (%)	평균 (%)
나/주변 이용 경험 있음	0.2	1.4	0.4	0.6
이용해 본 적 없음	99.4	98.2	99.2	98.9
무응답	0.4	0.4	0.4	0.4
합계	100.0	100.0	100.0	100

원스톱지원센터, 아동학대예방센터(제주시, 서귀포시), 아동성폭력센터, 성폭력 관련 상담소 및 피해자 쉼터, 가정폭력 상담소 및 피해자 쉼터, 장애인성폭력 상담소, 성매매 상담소 및 피해자 쉼터 이용 여부에 대하여 99.2%가 이용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82> 피해자 지원 기관 이용 여부(1)

구분	원스톱 지원센터 이용여부(%)	아동학대 예방센터 이용 여부(%)	해바라기 아동센터 이용여부(%)	성폭력 피해자 상담소 이용 (%)	성폭력 피해자 지원센터 이용 (%)
나/주변 이용 경험 있음	0.2	0.4	0.2	0.6	
이용해 본 적 없음	99.4	99.2	99.4	99.0	99.6
무응답	0.4	0.4	0.4	0.4	0.4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표83> 피해자 지원 기관 이용 여부(2)

구분	가정폭력 피해자 상담소 이용여부 (%)	가정폭력 피해자 상담소 이용여부 (%)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상담소 이용 (%)	성매매 피해자 상담소 이용 (%)	성매매 피해자 쉼터상담소 이용여부 (%)
나/주변 이용 경험 있음	0.8	0.4	0.6	0.6	0.2
이용해 본 적 없음	98.8	99.0	99.0	99.0	99.4
무응답	0.4	0.6	0.4	0.4	0.4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 6) 폭력예방 프로그램 운영제도

### (1) 제도 부문

현재 각 학교에서 추진되고 있는 여성폭력 예방을 위한 예방 교육이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해당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알고 있는 정도에 대해서 그저 그렇다고 응답한 응답자가 전체의 51.6%로 가장 많이 나타났으나 모르고 있다 30.4%, 잘 알고 있다 17.5%로 10명 가운데 3명은 관련 교육이 실시되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84> 초·중등 교육법과 여성폭력 예방 교육 인지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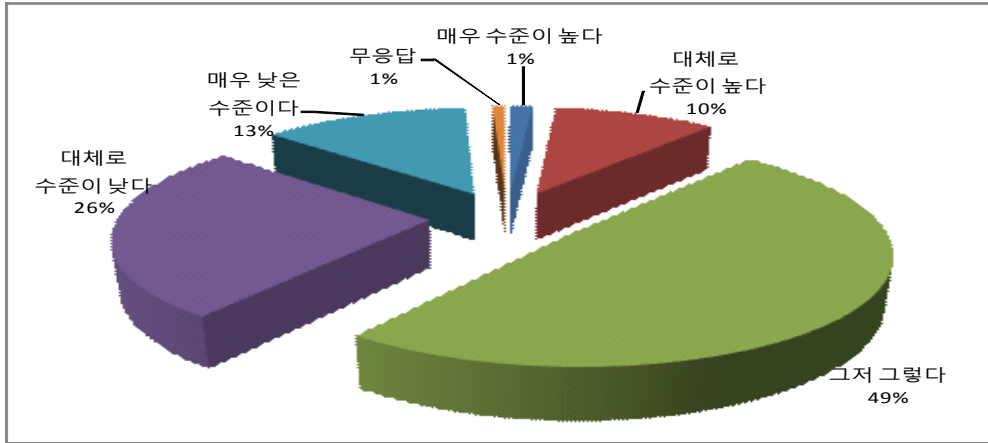
구분	빈도(명)	비율(%)
매우 잘 알고 있다	6	1.2
대체로 잘 알고 있다	83	16.3
그저 그렇다	263	51.6
대체로 모르고 있다	110	21.6
전혀 모르고 있다	45	8.8
무응답	3	0.6
합계	510	100.0

### (2) 폭력예방 교육 부문

#### a. 교육 수준

추진되고 있는 여성폭력 예방 교육의 내용에 대하여 그저 그렇다 49.0%, 수준이 낮다 38.8%, 수준이 높다 11.4%로 응답함에 따라 교육 내용의 만족도가 비교적 낮게 나타나고 있다.

<그림13> 폭력예방 교육의 수준



b. 생애주기별 교육 필요성

여성폭력 예방 교육이 생애주기에 따른 연령별 교육의 필요성에 대하여 필요하다 76.7%, 모르겠다 12.0%, 통합해도 된다 10.6%로 나타남에 따라 응답자의 3명 가운데 2명은 생애주기별 연령별 교육의 필요성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85> 생애주기별 폭력예방 교육의 필요성

구분	빈도(명)	비율(%)
매우 그렇다	210	41.2
그렇다	181	35.5
통합해도 된다	54	10.6
잘 모르겠다	61	12.0
무응답	4	0.8
합계	510	100.0

c. 여성인권과 관련 필요한 교육

여성 인권 및 폭력을 예방하기 위하여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는 교육에 대하여 모두 필요하다는 응답자가 57.1%로 나타났으며, 성폭력예방교육 22.0%, 인권교육 9.6%, 가정폭력예방교육 6.5%, 성희롱예방교육 2.9%, 성매매예방교육 1.4% 순으로 나타났다.

<표86> 폭력예방을 위해 필요한 교육

구분	빈도(명)	비율(%)
인권교육	49	9.6
성폭력예방교육	112	22.0
가정폭력예방교육	33	6.5
성매매예방교육	7	1.4
성희롱예방교육	15	2.9
①~⑤가 모두 필요하다	291	57.1
무응답	3	0.6
합계	510	100.0

d. 폭력 예방을 위한 대책

여성에 대한 폭력 예방을 위하여 시급하게 필요한 것으로 거리 치안강화 50.8%, 예방교육 22.0%, 방과후 아동별 귀가지원프로그램 19.2%, 방과후 프로그램 강화 5.9%, 기타 1.8% 순으로 조사되었다.

<표87> 여성안전을 위해 필요한 장치

구분	빈도(명)	비율(%)
거리 치안 강화	259	50.8
방과후 아동별 귀가지원프로그램	98	19.2
예방교육 실시	112	22.0
방과후 프로그램 강화	30	5.9
기타	9	1.8
무응답	2	0.4
합계	510	100.0

## IV. 여성에 대한 폭력 예방 프로그램

### 1. 예방 프로그램의 개요

#### 1) 여성에 대한 폭력 예방프로그램의 필요성

미국의 경우 여성에 대한 폭력을 줄이기 위하여 교육과 예방에 대한 지원금을 제도적으로 명시<sup>16)</sup>하여 법무부와 교육부가 함께 협의를 통해 추진하고 있으며, 학령별 교육 실시와 평가를 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피해자 지원 NGO, 자활기관단체, 관계 기관 협의회 등에서 실시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선정 지원하고 있다. 호주의 경우 여성 및 남성, 원주민 남성 성폭력이 증가하면서 폭력 예방을 위하여 위기 대응과 관련한 모범 사례를 발굴 홍보하고, 정책 발굴과 연구 등을 통한 사회 전반의 인식변화에 주요 초점을 두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외국의 사례를 통해 여성에 대한 폭력은 문제 해결 중심에서 벗어나 사전적·예방적 성격이 무엇보다 필요하며, 이를 위하여 교육이 반드시 함께 진행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아울러 폭력에 대한 예방이 개별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으나, 통합적인 폭력 예방 교육의 필요성이 강하게 대두되는 것이다.

#### 2) 여성에 대한 폭력 예방 프로그램 구성<sup>17)</sup> 특징

##### ① 교육 대상별 프로그램 구성

아동, 건강, 이민여성, 국제교류 활동, 사법제도 개선 활동, 공공정책, 청소년, 직장

16) 미국의 경우 VAWA(여성폭력방지법Violence Against Women Act) 제14편의 A편에 강간예방교육을 위한 배당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주로 NGO 단체에 지원하고 있으며, 비영리민간단체 세미나, 전문가 훈련 프로그램, 핫라인운영, 정보지 지원, 소수자에 대한 지원 등 성폭력 예방을 위한 각종 활동에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다(정영태. 2007)

17) 제주발전연구원 「성·가정폭력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기관간 연계구축방안」(정책과제 2007-25. pp69~92)에서 일부 프로그램을 발췌하였음을 미리 밝혀둔다. 성

등 8개 영역으로 구분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교육의 주요 내용은 “소년에서 남성으로 키우기”<sup>18)</sup>, 데이트 폭력 안내 잡지(*Connect*)관련 잡지 발행, 폭력 예방을 위한 학교 교사 프로그램, CORA 프로그램, ‘가정폭력중재프로젝트’ 등이 있으며, 가해자인 남성을 교육 대상으로 하는 집중 프로그램도 있다.

### ② 홍보를 통한 예방 효과

앞서 홍보를 중심으로 여성에 대한 폭력을 예방하는 호주의 경우 피해자 중심의 서비스와 더불어 홍보 및 예방 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다. 여성과 관련된 정책을 발국하고, 정책을 발의하는 활동이 결과적으로 폭력을 예방시킬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배포하는 폭력에 대하여 다양한 출신국가를 고려하여 다양한 외국어로 제작 배포하고 있으며, 활동가들에게 배포되는 지침 매뉴얼 역시 서비스 제공 등을 11개 영역으로 세분화시켜 적극적인 서비스가 제공 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③ 인권프로그램

성폭력과 가정폭력, 성희롱, 성매매 등 여성에게 일어나고 있는 폭력 피해는 결국 여성에 대한 인권이 존중받고 있지 못한데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인권은 단순히 1회성 교육을 통해 함양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꾸준히 해야 하기 때문이다. 인권 교육을 통해 얻어지는 가치는 존중, 소통, 분노와 용기 알기, 가치(맥락)알기, 실천 등으로 구성 학습을 할 수 있어야 한다.

## 2. 여성에 대한 폭력 예방프로그램(안)

폭력 예방 프로그램을 개별적으로 수립해야 하나, 본 연구에서는 크게 인권, 가정폭력, 성폭력, 아동성폭력, 성매매에 대한 기본 프로그램을 제시하고자 한다.

---

18) 8개 항목을 키워드로 하여 폭력을 예방시키는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일찍 알려주기’, ‘함께 하기’, ‘청취’, ‘대처’, ‘대화’, ‘롤모델’, ‘지속적인 교육’, ‘파트너십’ 등으로 구성 되어 있다.



프로그램명	인권 교육 - 인권 감수성 UP!		
프로그램기간	4회기(월 1회, 2시간)	프로그램대상	성인
프로그램목적	인권프로그램을 통해 인권 감수성 향상		
성과목표	① 인권감수성 상황지각 능력 향상 ② 인권감수성 책임지각 능력 향상 ③ 인권감수성 결과지각 능력 향상		
주요프로그램	세부프로그램	주요내용	
	인권이란	인권 기본 교육	
	인권개념	인권 개념 잡기 활동, 알쏭달쏭 인권을 잡아라!	
	인권과 행동변화	인권알리미 활동을 위한 역할극	
	인권과 변화	인권네트워크	
프로그램 결과 및 효과성	① 일방적인 강의 형태에서 벗어나 활동 중심의 강의를 통해 학습자의 자기주도 학습을 통한 참여성 향상 ② 인권학습 시 상호협력 과정을 통해 존중과 배려 실천 ③ 당사자 중심 및 상황에 대한 적극적인 요구 등 자신은 물론 타인의 인권 존중		
운영주체	지차제, 교육청, 관련 NGO		
운영방식	강의 위탁 및 프로그램 위탁 방식		

프로그램명	가정폭력 예방 프로그램 - 가정폭력 Out!		
프로그램기간	4회기(월 4회, 1시간30분)	프로그램대상	성인, 가족
프로그램목적	가정폭력예방프로그램을 통한 가족 건강성 찾기		
성과목표	① 인권 ② 가정폭력의 개념 ③ 가정폭력 대처와 관계 개선		
주요프로그램	세부프로그램	주요내용	
	인권이란	인권 기본 교육	
	가정폭력 실태	가정폭력 실태	
	가정폭력 후유증	가정폭력 후유증	
	건강한 가족	건강한 가족 만들기, 관계 회복	
프로그램 결과 및 효과성	① 건강한 가족 만들기 프로그램을 통해 가정폭력 예방 및 가족관계 개선 ② 폭력 가족 관계 개선을 통한 가족의 존중과 배려 함양		
운영주체	지차제, 교육청, 관련 NGO		
운영방식	강의 위탁 및 프로그램 위탁 방식		

프로그램명	성폭력 예방 - 아동성폭력 예방		
프로그램기간	2회기(4시간)	프로그램대상	아동, 학령기
프로그램목적	성폭력 예방을 통해 자기 결정권 향상		
성 과 목 표	① 성폭력 상황 인지 향상 ② 성폭력 예방을 위한 인권감수성 책임지각 능력 향상 ③ 인권감수성 결과지각 능력 향상		
주요프로그램	세부프로그램	주요내용	
	인권이란	인권 기본 교육	
	성폭력예방	소중한 나의 몸. 몸을 알자	
	위기대처 (1)	위험한 상황 인지와 위기 탈출	
	위기대처 (2)	상황극	
프 로 그 램 결과 및 효과성	① 단편적인 강의에서 벗어나 아동 또는 학령기에서 마주칠수 있는 다양한 사례를 학습 할 수 있는 기회 제공 ② 몸에 대한 소중함을 일깨우고, 위험한 상황에 대한 끊임없는 주의 환기 ③ 위기 대처와 생존		
운 영 주 체	지차제, 교육청, 관련 NGO		
운 영 방 식	강의 위탁 및 프로그램 위탁 방식		

프로그램명	성매매예방프로그램		
프로그램기간	2회기(상·하반기)	프로그램대상	성인
프로그램목적	성매매예방과 인권		
성 과 목 표	① 인권 ② 성매매의 폭력성		
주요프로그램	세부프로그램	주요내용	
	인권이란	인권 기본 교육	
	성매매 문제점	성매매 문제점	
	성매매 실태	성매매 실태	
프 로 그 램 결과 및 효과성	① 성매매를 근절하기 위하여 잠재되어 있는 남성중심 문화를 개선할 수 있음 ② 여성에 대한 폭력으로써 성매매를 인지함으로써 성매매 근절을 위한 사회 분위기 조성		
운 영 주 체	지차제, 교육청, 관련 NGO		
운 영 방 식	강의 위탁 및 프로그램 위탁 방식		

### 3. 프로그램 운영 추진체계 및 예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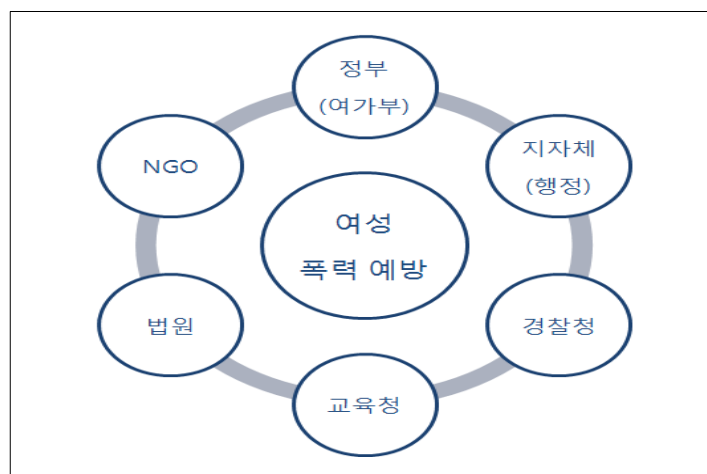
#### 1) 추진체계

여성에 대한 폭력 예방을 위하여 추진체계는 독립적으로 운영되기 보다 유기적인 관계망을 통해 서로 협력할 필요가 있다.

특히, NGO 영역의 경우 제주특별자치도는 사)제주 YWCA 여성의 피난처, 여성의 쉼터, 사)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여성상담소, 제주현장상담센터 해냄, 여성의 쉼터 불터, 사)제주상담센터 가족사랑상담소, 가족사랑쉼터, 천주교 제주교구 참사랑가정상담소, 생명의 샘, 천주교 유지재단 제주여성긴급전화 1366, 사)서귀포상담센터 서귀포가정행복상담소, 사회복지법인 한빛 여성의 쉼터, 사)제주도지체장애인협회 제주여성장애인상담소, 법률구조법인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제주지부, 제주외국인평화공동체 제주이주민센터, 제주한라병원 여성학교폭력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 등 16개 기관이 활동을 하고 있다.

이들과 행정과 교육청, 정부, 경찰청, 법원 등이 함께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과 더불어 활발한 네트워크를 통해 협력을 한다면 교육 및 예방프로그램을 더욱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그림14> 여성폭력예방을 위한 거버넌스 모형



## 2) 소요예산

여성폭력 예방을 위하여 추진할 수 있는 사업으로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추진할 수 있는 정책을 다음과 같이 수립 예산을 추정하였다.

<표88> 여성폭력 예방을 위한 소요예산

(단위:백만원)

계 획	4개년('11~'14) 계획(안)				비고
	'11	'12	'13	'14	
○ 여성폭력 실태 조사				50	단기
○ 인권감수성 교육		15	30	30	장기
- 인권감수성 교재 발굴	15				단기
○ 여성폭력 관련 시설 종사자 지원 및 처우개선	30	30	35	35	장기
○ 폭력피해 여성 자립·자활지원	20	20	25	25	장기
○ 가해자 교육 지원	15	15	20	20	장기
○ 피해자 쉼터 지원	30	-	30	-	장기
○ 성매매 근절을 위한 홍보활동	10	10	15	15	장기
○ 아동·청소년 성폭력 예방 교육 강화	20	20	30	30	장기
○ 폭력 예방 협의체 구성	3	3	5	5	장기
사업비 투자계획	143	113	190	210	

## V. 결론 및 제언

우리사회에서 여성에 대한 폭력문제는 인권문제로 인식되면서 사회의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었다. 성폭력 및 가정폭력 등 다양한 폭력이 여성을 둘러싸고 일어나고 있다. 특히 폭력 피해자의 연령과 가해자의 연령이 낮아지면서 폭력의 심각성이 더욱 흉포화되고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범죄 발생 건수 역시 증가하고 있는데 2008년 17,178건에서 2009년 18,351건으로 6.4%인 1,173건이 증가하였다.

예방활동으로 성폭력에 대하여 야간이나 새벽시간 등 취약시간대를 우선적으로 주택가, 골목길, 숙박업소 등을 자생단체 등과 함께 집중 관리하고 있다. 반면 가정폭력은 양성평등 의식이 확산되면서 “가정 내 문제”에서 “범죄행위”라는 인식이 정착되어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2003년 16,408건을 정점으로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데 2009년 12,493명이 검거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 밖에 아동·청소년을 위하여 여성기동대를 경찰청에서 추진 운영하고 있으며, 여성·학교 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한 ONE-STOP지원센터가 전국적으로 18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등 여성에게 가해지고 있는 폭력은 피해 당사자인 여성은 물론 가족 구성원까지도 ‘관례에서의 안전’이 담보되지 못하면서 일상 생활에 있어 가장 큰 위협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무엇보다 폭력 예방은 폭력 행위에 대한 대안 방법을 학습하고, 폭력에 대하여 암묵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태도를 변화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선진국은 폭력 예방의 첫걸음을 갈등해결에서 찾고 있다. 갈등 해결을 통해 평화를 만들어가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꾸준한 학습을 통해 체계적인 변화를 모색하고 있는 것이다.

본 연구는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제시하기보다 우선적으로 폭력에 대한 암묵적인 수용의 태도를 개선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본다. 결국 성인지적 관점의 폭력예방 교육을 통해 성에 대한 이해와 차이를 수용하고, 갈등을 평화롭게 해결할 때 폭력은 근절될 수 있기 때문이다.

## 참고문헌

- 이원숙. 2005. 가족복지론. 학지사
- 정영태, 김효선. 2007. 「성·가정폭력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피해자 보호·지원  
을 위한 기관간 연계구축 방안」. 제주발전연구원 정책연구 2007-25.
- 정영태, 김경희, 성윤애. 2007. 「성매매예방 교육 및 성매매 환경요인 분석」. 제주  
특별자치도.
- 조흥식 외. 2004. 여성복지학. 학지사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2009. 「2009 성희롱예방교육 전문강사 전문과정」 자료집.

### -법제처-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0.5.17 법률 제10300호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2007.8.3 법률 제8580호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타)일부개정 2010.4.15 법률 제10261호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 2010.4.15 법률 제10261호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 2010.4.15 법률 제10258호
-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정 2010.7.23 법률 제10371호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0.7.23 법률 제10391호
-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0.4.15 법률  
제22568호

### - 인터넷 자료

- 법 <http://zvon.org/law/r/un-prostitution.html>
- 제민일보 <http://www.jemin.com>
- 제주의 소리 <http://www.jejusori.net>
- 제주일보 <http://www.jejunews.com>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부록 1. 설문지

## 제주특별자치도 여성에 대한 폭력 실태와 예방프로그램 연구를 위한 설문조사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가운데 귀중한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제주발전연구원은 제주도 정책연구기관으로써 지역의 현안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2010년 제주발전연구원 연구사업의 일환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여성에 대한 폭력실태와 예방프로그램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여성은 성폭력, 가정폭력, 데이트폭력, 성매매, 성희롱 등 다양한 폭력에 노출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이러한 폭력은 성별을 떠나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으며, 최근 폭력이 더욱 심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데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예방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본 조사는 향후 제주특별자치도의 여성 폭력 근절을 위한 예방프로그램 만드는데 기초자료로 적극 활용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응답하신 내용은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의 규정에 따라 비밀이 보장되며 조사 목적으로만 사용됩니다.

모쪼록 제주특별자치도 여성정책의 발전을 위하여 성실하게 응답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0년 11월

제주발전연구원 원장 양 영 오

연구책임 : 제주발전연구원 정영태 초빙연구원  
조사책임 : 제주발전연구원 최영근 초빙연구위원

거주지	시 읍면동			응답자성별	①여    ②남
연령	①20대	②30대	③40대	④50대 이상	
학력	①중졸이하	②고졸	③전문대졸	④대졸	⑤대학원졸
직업	①전업주부    ②사무직    ③생산직    ④서비스직    ⑤판매직    ⑥관리직 ⑦자영·상공업    ⑧전문직    ⑨농사    ⑩학생    ⑪직업없음    ⑫기타(구체적: )				

## I. 성역할에 대한 의견

1. 귀하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쪽에 표를 하여 주십시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① _____ 보통 _____ 매우 그렇다 ⑤			
성교육은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더 필요하다				
성교육은 여학생보다 남학생이 더 필요하다				
남녀관계에서 여자의 "아니오"는 사실 그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아도 된다				
남자는 총각딱지를 결혼 전에 떼는 것이 통과의례이다				
여자는 성과 관련된 이야기를 거침없이 할 수 있다				
남자는 성과 관련된 이야기를 거침없이 할 수 있다				
남성의 성욕구는 자연스러운 것이다				
남자가 성관계를 주도하는 것이 당연하다				
여자가 성관계를 주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결혼을 전제로 하지 않아도 성관계를 할 수 있다				
혼전임신은 자연스러운 사회현상이다				
아무리 사랑하더라도 혼전 성관계는 해서는 안된다				
동거는 사회적으로 문제되지 않는다				
청소년의 성관계는 있을 수 없다				
가정 내 남편의 권위는 존중되어야 한다				
아내와 남편은 가정 내 동일한 결정권을 갖는다				
술을 마시고 일어나는 폭력은 어쩔 수 없다				
술자리에서 야한 농담은 분위기를 위해 필요하다				
자녀를 돌보는 일은 엄마/아내의 책임이다				



## II. 폭력에 대한 인식

2. 귀하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쪽에 표를 하여 주십시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①	_____	보통 _____	_____	매우 그렇다 ⑤
나에게도 성폭력은 일어날 수 있다					
나의 가족도 성폭력 피해자가 될 수 있다					
애인사이에서는 성폭력이 일어나지 않는다					
성폭력 피해자는 당사자에게 문제가 있다					
성폭력 피해자는 어리거나 젊은 여자가 많다					
성폭력은 신고하면 피해자가 손해이다					
성폭력은 주로 밤에 발생한다					
성폭력 예방교육은 별로 효과가 없다					
성폭력을 피해자는 제대로 일상생활을 할 수 없다					
성폭력은 아는 사람으로부터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누구나 성폭력 피해자가 누구나 될 수 있다					
가정폭력은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가정폭력은 술과 관련이 깊다					
아내 학대와 폭력은 가정폭력이다					
남편 학대는 가정폭력이다					
노인, 아동 학대는 가정폭력이다					
가정폭력은 자녀에게도 세습된다					
가정폭력 예방교육은 별로 효과가 없다					
가정폭력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부부싸움은 칼로 물 베기이다					
성희롱은 의도적이지 않고 친밀함의 표시이다					
성적인 농담이나 스캔십은 상대방이 거부해도 괜찮다					
성매매는 여성폭력이다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폭력을 당할 수 있다					
밤길은 여성, 아동·청소년에게는 안전하지 않다					
여성에 대한 폭력은 예방이 꼭 필요하다					
스토킹도 폭력이다					

3. 귀하께서 다음 가운데 어느 것이 성과 관련된 언어적 폭력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모두 골라주십시오)

- ① 모욕                      ② 중상모략(비방)                      ③ 욕설                      ④ 위협하기  
 ⑤ 고함지르기              ⑥ 두렵게 하기                      ⑦ 공격적인 언어로 소리치기 ⑧ 기타

4. 귀하께서 다음 가운데 어느 것이 성과 관련된 신체적 폭력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모두 골라주십시오)

- ① 때리기                      ② 주먹치기                      ③ 꼬집기                      ④ 밀기/떠다밀기  
 ⑤ 거칠게 잡기              ⑥ 손바닥으로 때리기              ⑦ 목조르기                      ⑧ 깨물기  
 ⑨ 물건던지기              ⑩ 팔 비틀기                      ⑪ 방해하기                      ⑫ 주변물건파손  
 ⑬ 제압하기                      ⑭ 머리잡아당기기              ⑮ 무기사용                      ⑯ 기타

Ⅲ. 폭력에 대한 처벌

우리나라는 성폭력과 관련 1994년 성폭력방지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으며, 1997년 가정폭력방지에 관한 법률 제정, 2000년에는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04년 성매매방지법 등을 제정하여 여성폭력을 근절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여성발전기본법과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는 성희롱을 규정 다루고 있습니다.

5. 귀하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쪽에 표를 하여 주십시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①	보통	매우 그렇다 ⑤
현재 성폭행 형량은 낮은 실정이다			
아동성폭행 형량은 더 강화되어야 한다			
성범죄자의 신상정보공개는 꼭 필요하다			
위치추적 전자장치는 확대 강화되어야 한다			
성관련 범죄자의 거주제한제도 도입이 필요하다			
폭력에방교육을 제도적으로 의무화 하여야한다			
성희롱은 예방교육보다 처벌을 강화해야한다			

IV. 폭력 피해자지원 제도

6. 2006년 6월 30일부터 시행된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제도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자가 모두 등록대상으로 사진을 포함한 신상정보를 여성가족부에서 등록 운영하고 있는 성범죄자 알림e사이트(<http://www.sexoffender.go.kr/>)를 알고계십니까?  
 ① 잘 알고 있다 ② 알고 있다 ③ 처음 들었다 ④ 전혀 모른다
7.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긴급 상담과 보호를 위하여 1년 365일 24시간 운영되는 전화번호인 1366에 대하여 알고계십니까?  
 ① 잘 알고 있다 ② 알고 있다 ③ 처음 들었다 ④ 전혀 모른다
8. 1366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는 긴급상담, 보호, 의료서비스, 법률서비스, 사회복지서비스, 검경찰 서비스, 기관 연계 등 다양하게 제공되고 있다.  
 ① 잘 알고 있다 ② 알고 있다 ③ 처음 들었다 ④ 전혀 모른다
9. 여성·학교폭력지원센터인 원스톱지원센터가 한라병원 내에 위치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① 잘 알고 있다 ② 알고 있다 ③ 처음 들었다 ④ 전혀 모른다
10. 귀하는 다음 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하여 알고 계십니까?

문 항	안다	모른다
가정폭력, 성폭력 등 긴급 상황 긴급전화는 ☎1366이다		
이주여성을 위한 긴급전화는 ☎1577-1366이다		
노인학대 예방센터 전화는 ☎1389이다		
아동학대 예방센터 전화는 ☎1391이다		
청소년 유해사범신고 전화는 ☎1388이다		
여성, 아동폭력, 성매매 신고 전화는 ☎117이다		
제주도내 여성·학교폭력 지원기관인 원스톱지원센터(한라병원 내 소재)가 있다		
제주도내 아동학대예방센터(아동보호전문기관)가 있다		
제주도내 아동성폭력센터(해바라기센터)가 있다		
제주도내 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한 기관을 알고 있다		
제주도내 성폭력 피해자 쉼터가 있다		
제주도내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한 기관을 알고 있다		
제주도내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쉼터가 있다		
제주도내 장애인성폭력 상담기관을 알고 있다		
제주도내 성매매 피해자 상담소를 알고 있다		
제주도내 성매매 피해자 지원 기관을 알고 있다		
제주도내 미혼모 시설을 알고 있다		

11. 다음 긴급전화 또는 기관을 이용해보신적이 있으십니까?

문 항	나 혹은 주변에서 이용해 본 적 있다	이용 해 본 적 없다
여성긴급전화 ☎1366		
이주여성 긴급전화 ☎1577-1366		
노인학대 예방센터 ☎1389		
아동학대 예방센터 ☎1391		
청소년 유해사범신고전화 ☎1388		
성매매 신고 전화 ☎117		
제주도 여성·학교폭력 지원기관 원스톱지원센터		
제주도 아동학대예방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 제주시, 서귀포시		
제주도 아동성폭력센터 - 해바라기센터		
제주도 성폭력 피해자 상담소		
제주도 성폭력 피해자 지원 쉼터		
제주도 가정폭력 피해자 상담소 - 제주시, 서귀포시		
제주도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쉼터 - 제주시, 서귀포시		
제주도 장애인성폭력 상담소		
제주도 성매매 피해자 상담소		
제주도 성매매 피해자 쉼터		

V. 폭력 예방 프로그램

12. 여성폭력 예방을 위하여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각 급 학교에서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 성희롱 예방교육 및 성매매 예방교육, 가정폭력예방과 방지를 위한 교육 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당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 ① 매우 잘 하고 있다                      ② 대체로 잘하고 있다                      ③ 그저 그렇다  
④ 대체로 못하고 있다                      ⑤ 매우 못하고 있다

13. 귀하께서 받은 여성폭력 예방 교육의 내용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수준 높다                      ② 대체로 수준이 높다                      ③ 그저 그렇다  
④ 대체로 수준이 낮다                      ⑤ 매우 낮은 수준이다

14. 귀하는 여성폭력 예방 교육이 연령별로 특성을 살려서 실시해야한다고 생각하십니까?